

연구총서 2001-19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전략과 시뮬레이션

이 헌 경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군사력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북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측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강화 배경, 핵개발 의혹과 체네바합의 사항, 미사일 개발·생산·수출·배치 문제, 생화학무기 확산, 재래식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부시 행정부의 대응전략을 파악할 것이다. 검증과 힘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적 노선에 의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과 사안별 세부 전략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미·북의 전략과 대응, 협상형태, 사실분석, 경험적 접근 등을 토대로 미·북간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에 있어 미국과 북한의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핵·미사일·생화학무기·재래식 군사력 문제와 관련 미·북간 예측 가능한 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미국과 북한의 행동과 반응을 예측하고자 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군사력 실태 현황

북한은 현대화된 장비로 무장된 한·미연합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주력하고자 한다.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북한의 전력이 한·미연합 전력보다 열세인

점을 감안하고 있는 북한은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고 한·미연합군에 대한 위협·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생산하고자 한다.

북한은 제네바합의에 따라 플루토늄 추출시설로 추정되는 방사화학 실험실을 폐쇄하는 일련의 핵활동 동결작업을 실천해 왔다. 또한 북한은 5MWe 원자로에서 꺼낸 8,000여 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밀폐 보관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를 완료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에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핵무장을 통해 정치적·이념적 단합을 기하고자 한다. 둘째, 상실된 소련으로부터의 핵우산에 대비하고자 한다. 셋째, 미국의 핵공격과 선제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 넷째, 핵보유국으로서 군사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설과 관련, 러시아·일본은 북한이 1개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동결 이전까지 재처리를 통해 1~2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북한은 Scud-B, Scud-C, Scud-D 중·단거리 미사일을 500~600기 정도를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실제 탄두를 장착한 Scud-D 미사일 100기를 일본의 일부 지역과 주일 미군기지를 향해 겨냥하고 있다. 게다가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용으로 몇 기 보유하고 있으며 대포동 2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체제유지의 수단, 군사력 증강, 외화획득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사일이 현대 전쟁의 주요 군사적 무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미사일을 개발하려 한다. 게다가 북한은 외화벌이

를 위해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화학무기 개발·생산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8개 비료공장에서 사린, VX-3, 염화시안, 청산제, 겨자가스, 포스겐 등 신경성·수포성·혈액성·최루성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평시에 연 4,500톤, 전시에 12,000톤까지 가능하다.

북한은 생물무기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을 통해 생물무기 개발·생산에 나서고 있으며, 콜레라, 탄저균, 페스트,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켓차, 섹시톡신,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이질, 발진티푸스, 결핵 등 13종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결정한다면 몇 주일 안에 충분한 양의 세균무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물무기 생산능력은 연간 약 1,000톤에 이른다.

생화학 무기는 저렴한 비용과 단순한 제조기술로 개발·생산이 가능하고 엄청난 살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북한과 같은 빈국이 선호하고 있다. 핵이 전쟁억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거나 실제 전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는 전투력 강화와 함께 상대에게 치명적 위협·타격을 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사비는 13억 달러로 총 예산의 25~33%에 달하며, 이는 총 산업투자의 약 50%에 해당된다. 이러한 수치는 북한의 군사비 규모, 전력증강 실태, 군사력 운용 규모 등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군사력 증강으로 경제에서의 자립정책은 실패했으나 군사에서의 자위는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미국의 전략

미국은 핵·미사일 및 그 운반수단의 전면적인 확산으로 비롯되는 위

협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검증과 힘의 노선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전략적 틀과 함께 ‘확고한 목표’와 ‘전술적 유동성’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한다.

부시 행정부는 핵개발 가능성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량의 생화학무기 및 가공할 만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불량국가 북한이 미국 및 동맹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시 미국 협상팀은 대북정책의 기초와 원칙을 준수하면서 거래형식의 정치적 협상을 지양하고 자국의 주도 하에 협상을 이끌어 가려 할 것이다. 부시 진영의 팀은 협상의 틀을 타결한 뒤 실무자들에게 검증문제를 맡기려 했던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미사일문제, 핵사찰 및 안전기준 이행,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한 협상에서 감시, 투명성, 상호주의에 비중을 두면서 그 이행까지 검증하려 할 것이다. 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란 확고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며, 전술적 유동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려는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미국이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협상이든 협정이든 투명성을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체제가 확보되어야 하며, 비밀에 싸이고, 자유와 언론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와의 협정체결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핵문제와 관련, 부시 행정부는 외교적 전례를 존중하고 제네바합의 파기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먼저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사찰수용을 위해 북한주민지원, 전력공급 등을 당근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사찰에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제네바합의 재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대안으로 미국은 경수로 한 기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거나 두 기 모두를 대체

하는 방안 그리고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미사일문제와 관련, 우선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 저지에 주력할 것이며, 미사일 개발·수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국은 협상에서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에 초점을 둘 것이다.

핵·미사일 문제의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화학무기금지협정」과 「생물무기협정」 새 의정서에 북한이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와 한반도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배치 전력’을 구성하려 할 것이며 북한의 테러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사실분석과 경험적 접근에 의한 미·북간 시뮬레이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간 협상 실태와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재래식 군사력과 관련된 미국의 대응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진행된 사실·경험 등을 분석 대상으로 미·북간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핵문제 관련 미·북간 시뮬레이션에서 제네바합의의 준수 여부가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미·북간 합의가 양측의 행동의 지침인 동시에 또 다른 행동을 제약하고 있으나 이를 먼저 위배하는 경우 상대측의 반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준수하면 미국이 1기의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대북 중유제공 및 경수로 공급을 계속하며,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하면 미국이 관련 법안을 해제하고 경수로 핵심부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IAEA의 안전조치 이행 및 조기 특별사찰

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제네바합의 재검토를 비롯해 경수로 공급 지연·중단 등의 조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합의 없이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할 때 또는 대북 중유 지원 및 경수로 공급을 중단할 때 북한은 이를 제네바합의 위반으로 간주, 미·북간 합의사항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평양정책결정자들은 폐연료봉 반출을 지연하면서 핵개발 위협을 미국을 대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과거 핵물질의 행방을 포함, IAEA의 주도 하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핵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사찰을 계속해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미·북 간은 경색국면에 놓여질 것이며 대북 중유제공 중지를 포함해 경수로 공급지원이 난관에 처해질 것이다. 이는 곧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위기가 재연되었을 때 미국이 ‘시간적 데드라인’을 설정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한계선’을 긋거나 강도 높은 압박정책을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을 봉쇄·고립시키거나 북한의 핵시설물을 공격하는 군사제재 조치 역시 북한을 자극시켜 오히려 호전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북한이 제네바합의 파기에 나설 때 미국은 북한을 고립·봉쇄하는 ‘선의의 무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더 강도 높은 조치로 북한의 핵시설을 부분적으로 폭격하는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시설물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공격과 같은 군사제재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案에 불과하나 실패확률이 높고, 폭격으로 인해 치명적인 방사능 유출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생화학무기 공격과 이들 무기를 사용해 테러에 나설 경우 미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제재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쟁예방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뒤엎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관련국 모두가 미국의 군사제재에 반대할 것이다. 미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시 냉전의 시대를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도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경우 전쟁이란 최후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양의 정책결정자들은 전쟁을 통해 공멸을 시도하기보다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을 통해 돌파구를 풀어나가려 할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먼저 위반하지 않는 한 미국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제네바합의의 틀 내에서 행동하고자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선 미국의 요구에 대해선 보상을 저울질하면서 수용 여부를 결정지으려 할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직 없고, 핵심부품 인도와 함께 이루어질 철저한 사찰을 강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선택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핵문제 해결은 북한의 IAEA 특별사찰 수용을 전제로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미국이 대북전력 제공에 나서는 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봉인된 폐연료봉의 3국 이전을 이행하고 IAEA의 무제한적인 사찰과 강화된 안전기준에 동의한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규모 대북지원과 전력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을 강제로 저지하기는 어렵다. 미·북간 합의시 미사일 개발·수출을 제한할 어떠한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했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체제수호, 군사력증강, 협상카드로 그리고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을 외화벌이 목적으로

여기고 있어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주권사항임을 주장할 때 미국이 적절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실제로 미사일이 안보의 문제이지 합법성의 문제가 아니므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수출이 미국의 동맹국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미국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북한의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북한자산 동결 해제 조치와 함께 30억 달러에 해당되는 현물 보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한다면 비확산 관련 법규 및 민감물자 통제에 관한 다자협정에 따른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개발 중단은 미국으로부터 대북지원 확대 및 추가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추진하거나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행위를 추진하면 미국은 그 동안 취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원상 복구함은 물론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나설 것이다.

미·북간 미사일 협상이 미진한 상태에서 양측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거의 합의에 도달한 내용을 참고 삼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와 미국의 보상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성사시킨다면 미사일문제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시험발사 포기 및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중단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철수를 실시하고, 미국이 대규모 식량·생필품지원, 추가 경제제재 완화조치, 국제사회의 인공위성 대리 발사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인공위성 대리 발사시 북한기술자의 참여 배제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청을 평양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양보

없이는 결코 맞교환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양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더 많은 식량·생필품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미사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탄저테러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태에 있다. 북한은 핵 다음에 미사일문제를 야기했고, 그 다음엔 생화학무기 확산을 가지고 미국과 흥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은 보다 강화될 「생물무기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한의 동참을 요청할 것이며 동시에 「화학무기협정」 가입을 촉구할 것이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 대가로 미국은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보상과 함께 추가적으로 정부적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과 경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면 미국은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와 더불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및 그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과 미·북간 교역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북한에 가져다 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정상교역관계대우 및 일반특혜관세제도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문제는 한·미 역할분담론에 입각해 남북한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사일보다 재래식 전력을 주권 차원에서 더 중시 여기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완화의 진전도에 따라 남북한이 구조적 군비통제와 운용적 군비통제를 차근차근 추진한다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4.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단 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한 대안

현실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과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예상하기 어렵다. 사안별로 보상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하지만 미국이 줄 수 있는 보상과 북한이 기대하는 보상에 차이가 있을 때 협상 타결은 어렵다. 미국의 요구가 너무 일방적이고, 북한의 요구가 너무 지나칠 때도 협상 타결은 어렵다. 핵문제는 제네바합의라는 잣대가 있지만 미사일문제는 기준 잣대가 없다. 북한이 「생물무기협정」 새 의정서와 「화학무기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하지 않을 때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강제력이란 수단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안별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 역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방식대로 북한을 달래고 북한의 페이스대로 미·북간 협상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협상의 틀을 타결한 뒤 실무자들에게 검증문제를 맡기려 했던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구체적 약속 이행을 확인한 후에 다음 협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방식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예상행동에 북한이 응할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와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해선 일괄타결 방안이 적절한 대안이라 여겨진다. 그것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와 미·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포기과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나서고 개혁·개방에 호응할 경우 미국이 대규모 식량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국제기구 가입 지원, 전면적 경제재완화조치, 정

치·경제·사회·문화교류의 확대, 체제 존립 보장, 관계정상화 등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다.

일괄타결은 2단계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는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행하고 미사일의 전방 배치 철수 및 기술·장비 수출 중단을 실현하면 미국은 북한이 경제 희생할 수 있는 발판을 확실히 제공해 주고 관계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2단계는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이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개발 영구 중단과 함께 생화학무기 포기 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나서면 미국이 경제발전 전에 절대적 기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사회주의체제 보장과 국교정상화에 나서는 것이다. 요컨대, 1단계는 합의와 보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북한이 조치하고 그 대가를 미국이 제공하는 것이며, 2단계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단 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나서면 그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경제발전, 체제보장, 안전 등을 확실히 보장하고 북한과의 수교에 나서는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단 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통해서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서방세계로부터의 대규모 식량·경제지원 및 투자진출을 얻을 수 있어 북한의 경제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제를 보다 확고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안별 해결방안이나 일괄타결을 위해선 미·북 양측의 진통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미국이 정책을 확정짓고 북한에게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강요하면 절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 이러한 강요는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호전성과 투쟁성을 강화시키게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게 만든다. 중국·러시아는 물론 한국정부마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도 부시 행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이라크, 코소보, 아프가니스탄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바 있는 미국이 한반도 군사충돌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서 즉각적인 응징의 수단보다는 좀더 인내를 가지고 설득·협상하는 외교적 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적절한 당근을 내놓고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미·북간 협상은 절충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이 미·북 사이의 네트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911테러사건 이후 미·북간 대화·접촉이 사건이전보다 더 후퇴한 상태에서 부시 행정부가 원점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다루려 한다면 협상은 시작조차 어려울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 미·북간에는 협상타결의 길을 터 놓았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미·북간 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며 당근과 채찍의 수단과 함께 검증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911테러사건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반테러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연대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수출 그리고 생화학무기 보유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북한에게 과거의 혈맹동맹국이 더 이상 아니지만 미국에 비해 북한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중국의 역할은 보다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비대칭 위협과 새로운 테러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비확산과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의 전면적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군사력 실태	4
1. 군사력 강화 배경	4
2. 대량살상무기 실태	7
가. 핵개발 의혹과 제네바합의 사항	7
나. 미사일 프로그램	13
다. 생화학무기	19
3. 재래식 군사력 실태	26
III.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미국의 전략	30
1. 검증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략	30
2. 사안별 세부 전략	35
가. 핵사찰과 제네바합의 검토	35
나. 미사일 개발·생산·수출·배치 중단	39
다.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	43
라. 재래식 군사력 감축	45
IV. 미·북간 협상실태	49
1. 핵 협상	49
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미·북간 협상	49
나. 금창리 지하시설 방문 협상	52
2. 미사일 협상	54

V. 미·북간 시뮬레이션	62
1. 미국과 북한의 수단	62
가. 미국의 수단	62
나. 북한의 수단	68
2. 사실 분석에 근거한 미·북간 시뮬레이션	72
가. 핵 문제	72
나. 미사일 문제	80
3. 경험적 접근에 의한 미·북간 시뮬레이션	96
가. 핵 문제	96
나. 미사일 문제	102
다. 생화학무기 문제	105
라. 미사일·생화학무기 문제	107
마. 재래식 군사력 문제	108
바. 일괄타결 방안	109
VI. 결론	110
참고문헌	119

I. 서론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에 대한 대책에 소홀히 했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 당시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했고, 페리보고서 및 베를린회담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우선적 초점을 맞추었을 뿐,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에 대한 유효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이 결과에만 집착해 북한과 충분한 협상을 하지 못했으며 보상식 접근 방식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동해 왔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가 차후 약속 이행 담보만으로 북한에 지원을 했었고, 그 결과 북한이 많은 것을 얻은 반면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과 함께 부시 대통령은 한·미·일 2차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Oversight Group: TCOG)에서 합의된 사항과 그 동안의 정책검토를 정리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북협상 의제로 제네바합의 이행 개선, 북한의 미사일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미사일수출 금지, 재래식 군사위협 감소 등을 제시하였다.¹⁾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실주의적 외교노선에 입각한 힘의 우선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핵·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문제 해결

1) “Text: Bush Statement on Undertaking Talk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File* (hereafter cited as President Bush’s Statement), 7 June 2001.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패와 미국의 대응: 전략과 시뮬레이션

에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미국은 냉전종식으로 핵전쟁의 위험은 감소했지만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언제든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미국은 휴전선 부근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가공할 만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등을 주한미군 및 미국의 동맹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재래식 군사력 실패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 배경, 핵개발 의혹과 제네바합의 사항, 미사일 개발·생산·수출·배치 문제, 생화학무기 확산, 재래식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뒤 제Ⅲ장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미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검증과 힘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적 노선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과 사안별 세부 전략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제Ⅳ장은 그 동안 진행된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간 협상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및 금창리 지하시설 방문 그리고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간 협상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제Ⅱ, Ⅲ, Ⅳ장을 토대로 제Ⅴ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재래식 군사력 문제와 관련, 미·북간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시도하고자

한다. 미·북의 전략과 대응, 수단, 협상형태, 사실분석, 경험적 접근 등이 시뮬레이션에 있어 주 분석·행동 단위로 작용할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행동과 반응을 예측하고자 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단 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II.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군사력 실태

1. 군사력 강화 배경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여러 국가들은 무기의 고도화와 대량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쟁상태에 있거나 분쟁·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국가들의 경우, 가공할 만한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유지와 김정일 정권 강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다. 위기 돌파의 일환에서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제일주의의 기조와 함께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국방공업은 생명과 같은 것이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것은 우리의 독특한 정치방식”²⁾임을 강조하는 것을 보더라도 북한의 국방력 강화 의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은 국방력 강화가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압살 책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³⁾ 대응 차원에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⁴⁾이며 “원수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로 맞서고 전쟁의 불을 지르면 무자비한 박멸로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⁵⁾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멸적의 의지와 힘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세계 최대 군사 대국인 미국의 군사적 힘을 두려워하고 있

2) 『로동신문』, 2001.7.9.

3) 『로동신문』, 1999.10.25.

4) 『민주조선』, 2001.3.18.

5) 『로동신문』, 2001.3.17.

으며, 그들의 주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력강화 차원에서 북한은 특히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주력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대화된 장비로 무장된 한·미연합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⁶⁾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북한의 전력이 한·미연합 전력보다 열세인 점을 감안하고 있는 평양지도부는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고 한·미연합군에 대한 위협·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생산하고자 한다.

그 배경은 북한의 안보불안감에서 찾을 수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 북한은 주적이었던 미국을 상대로 자신이 받고 있는 군사적 불안감을 제거하고자 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공세적 지원정책이 방어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자 북한은 군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으로부터의 핵공격 및 선제공격 가능성을 억지 차원에서 차단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교전관계에 있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戰 이후 미국이 ‘북한을 주된 목표의 하나’⁷⁾로 삼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걸프戰 및 아프가니스탄戰에서 나타난 미군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에 공포를 가지고 있다. 평양지도부는 북·미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될 때, 미국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 폭발할 수 있는 Deep Digger 신형폭탄, 공대지 미사일의 개량종인 AGM-86D⁸⁾ 등을 통해 북한의 땅속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B-2 스텔

6) The U.S. Secretary of Defense, “2000 Report to Congress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12 Sept. 2000.

7) 『조선중앙TV』, 2001.12.18.

8) Andrew C. Revkin, “U.S. Is Developing Powerful Weapons to Pierce

6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전략과 시뮬레이션

스 폭격기, F-117 스텔스 전투기, 크루즈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할 시 북한의 전력이 마비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게다가 괌에 배치된 B-52 장거리 핵미사일과 태평양을 순회하는 미 핵잠수함을 이용해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과 함께 북한은 핵무기 보유에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핵무장을 통해 정치적·이념적 단합을 기하고자 한다. 둘째, 상실된 소련으로부터의 핵우산에 대비하고자 한다. 셋째, 미국의 핵공격과 선제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 넷째, 핵보유국으로서 군사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핵뿐만 아니라 북한은 생화학무기 보유에도 집착하고 있다. 생화학무기는 저렴한 비용과 단순한 제조기술로 개발·생산이 가능하고 엄청난 살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에서는 일반적으로 핵과 독가스를 갖고 있는 적과의 싸움에서는 핵과 독가스로 대응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⁹⁾이 군사이론화돼 있으며, 핵이 전쟁억지를 위해서는 효과적이나 실지 전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는 전투능력 강화와 함께 상대에게 치명적 위협·타격을 가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미사일 개발·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한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체제유지의 수단, 군사력 증강, 외화획득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미사일이 현대 전쟁의 주요 군사적 무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미사일을 개발하려 한다.

the Deepest Sites,” *New York Times*, 4 Dec. 2001. 미 국방부 특수무기국이 개발한 Deep Digger 등 일부 신형 폭탄과 미사일 탄두는 이미 완성돼 실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 땅속을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공대지 미사일의 개량종 AGM-86D가 있다.

9) *Radio Free Asia*, 2 April 1999.

東西간 냉전종식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감소한 반면 전쟁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쟁에서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과 생화학무기의 사용금지 등으로 인해 미사일 공격과 재래식 군사력 사용은 이제 현대 전투에서 정당성을 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분쟁·갈등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전시에 대비하거나 상대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생산·개발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경우, 전시대비 및 억지 차원을 넘어 효과적인 공격과 상대에 위협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미사일 개발·생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외화벌이를 위해 대중동 적성국가들에게 미사일 기술·장비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2. 대량살상무기 실태

가. 핵개발 의혹과 제네바합의 사항

현대의 군사대국들은 핵무기의 출현과 더불어 대량살상무기들을 가지고 있어 굳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무기는 상대방에게 공포와 위험성을 주면서 억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현재 미국(1945), 소련(1949), 영국(1952), 프랑스(1960), 중국(1964) 등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브라질, 남아공 등 16개국은 핵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 일본, 북한, 한국, 스웨덴, 대만, 이란, 이라크 등의 나라들이 핵개발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어느 강대국도 비핵국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가채량 400만 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한 후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료를 도입하고 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축적하여 왔다.¹⁰⁾

소련은 영변의 핵연구센터가 설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후 1965년에 소규모의 원자로와 이것을 가동할 연료를 북한에 제공하였다.¹¹⁾ 또한 소련은 「드부나 핵연합연구소」의 핵물리학자를 북한에 보내¹²⁾ 우라늄 채굴 노하우와 핵선진 기술 축적에 기여해 왔다. 북한은 소련 정부가 공급한 저위급 방사성물질을 소련정부가 원조한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영변 핵재처리 공장에서 순도 높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농축¹³⁾할 수 있었으며 다방면에 걸친 소련의 도움과 협조로 핵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북한은 19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화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자체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에 성공하였다.¹⁴⁾ 1980년에는 5MWe급 연구로 건설에 나섰으며 핵무기 개발은 1985년부터 시작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 핵개발 체계 완성에 주력하여 1986년에 우라늄 정련, 변화시설의 운용을 시작하였고, 1989년에는 태천에 200MWe급 원자력 발전소를 착공하였으며, 영변에 대규모 재처리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

10) 국방부, 「국방백서 2000」 (서울: 국방부, 2000), pp. 43~44.

11) Warren Stribel, "N.Korea Shops for Nuke Technology in Russia," *Washington Times*, 5 July 1994.

12) 하지만 소련은 북한이 비군사적 목적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우라늄을 농축시키고 있음을 확인한 뒤, 북한에 가있던 핵전문가 다수를 본국으로 소환한 바 있다. 「경향신문」, 1994.2.15.

13) 「Newsmaker」, 1994.2.3, p. 23, 「週刊文春」에서 인용.

14) 국방부, 「국방백서 2000」, p. 44.

였다.¹⁵⁾ 이러한 북한의 핵시설은 <表-1>에서 보다 세분화되어 묘사되고 있다.

<表-1> 북한의 핵시설 현황

순번	시 설 명	수량	소재지	비 고
1	연구용 원자로 (IRT-2000)	1기	영변	'65년(2MWt→4MWt→8MWt)
2	임계시설	1기	영변	0.1MWt
3	5MWe 실험용 원자로	1기	영변	25MWt('79착공→'86가동)
4	방사화학실험실	1개소	영변	'85착공-'89가동-'95완공 예정이었으나 '94.10 건설 중단
5	핵연료봉 제조시설	1개소	영변	
6	핵연료 저장시설	1개소	영변	
7	준 임계시설	1기	평양	김일성 대학
8	50MWe 원자력발전소	1기	영변	'85착공, '94건설 중단
9	200MWe 원자력발전소	1기	평북태천	'89착공, '94건설 중단
10	우라늄 정련공장	1개소	황북평산	
11	우라늄 광산	1개소	황북박천	
12	우라늄 광산	1개소	황북평산	
13	우라늄 광산	1개소	평남순천	미확인
14~16	원자력발전소(635MWe)	3기	함남신포	계획단계에서 중단
17	동위원소 생산가공연구소	1개소	영변	미신고
18	폐기물 시설	3개소	영변	'76, '90(Bldg 500), '92

자료: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서울: 국방부, 2001), p. 96.

15) 위의 책.

1990년대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⁶⁾ 특히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핵실험의 전단계인 완제품 고폭장치에 대한 실험(고폭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⁷⁾

그러나 고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에 고차원의 정밀기술이 필요되고 북한이 고폭장치관련 부품 획득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핵폭탄 개발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와 관련, 소련의 KGB는 북한이 핵폭탄 제조를 위한 과학적·실험적 설계작업을 마쳤다고 보았으며,¹⁸⁾ 러시아 국가안보 및 전략연구소는 북한이 전체주의 체제 하에 있는 특정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핵실험을 끝냈다고 본다.¹⁹⁾

이러한 판단과 함께 러시아는 북한이 최소한 핵폭탄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에 대해선 일본 방위청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²⁰⁾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미 CIA의 비밀보고서(1997.5)는 북한의 핵무기와 지하핵실험 계획 내용을 전함으로써²¹⁾ 러시아·일본이 판단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16) 위의 책.

17) 북한은 1983년부터 고성능 폭발실험을 70여 회 실시한 것으로 탐지되고 있으나 이들 실험은 ‘고폭장치 조립 이전단계에서 고폭장약 자체의 성능시험’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3년 이후 고폭장치 관련 일부 부품과 재료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첩보를 고려할 때 완전한 고폭장치 개발 및 고폭실험 실시 여부는 아직도 불확실하다.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서울: 국방부, 2001), p. 93.

18) *Washington Time*, 5 July 1994.

19) 「경향신문」, 1994.2.15.

20) 「日本經濟新聞」, 1998.6.3.

21) *Washington Times*, 5 June 1997. 1997년 5월 9일 국회 정보위에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핵실험까지 준비했으나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중시하는 북한 외교부의 반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동결됐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국방부는 북한은 조잡한 핵 폭발장치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으나 그 기술수준은 초보적인 단계로 추정되며, 제조했다라도 신뢰성은 낮아 무기화에는 최소 수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²⁾

한편 미국은 북한이 핵동결 이전까지 재처리를 통해 1~2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³⁾ 미국방부는 북한이 1986년부터 가동중인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한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생산해 냈다고 밝힌 바 있으며,²⁴⁾ 구체적으로 CIA는 북한이 12kg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²⁵⁾

22)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p. 94.

23) See CIA, “Unclassified Report to Congress on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1 July Through 31 Dec. 2000 (hereafter cited as CIA Annual Report from 2001); Remarks by the Deputy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John E. McLaughlin to Texas A&M Conference “North Korea: Engagement or Confrontation,” 17 April 2001; William Perry’s Interview on *Chosun Ilbo*, 11 May 2001. 보충적 설명은 *Los Angeles Times*, 7 July 1997; *Washington Post*, 3 Dec. 1993; *Washington Times*, 22 Dec. 1993;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7 Dec. 1993/26 June 1994; *New York Times*, 9 Jan. 1994 참조. 한편 영국의 군사정보 전문가 버뮤데즈(Joseph S. Bermudez Jr.)는 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12개까지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원료를 가지고 있으며 2015년까지 핵폭탄 30개를 제조하려 한다고 본다. *USA Today*, 11 July 2001.

24) *Washington Times*, 5 June 1997.

25) Nonproliferation Center CIA,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1 Jan. through 30 June 1998. 국방부는 ‘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여러 가용정보를 종합해 볼 때 약 10~12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핵탄 1~2개 정도 제조 가능한 분량이다.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북한의 핵개발과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제네바합의에 따라 플루토늄 추출시설로 추정되는 방사화학실험실을 폐쇄하는 일련의 핵활동 동결작업을 실천해 왔다. 또한 북한은 1996년 5월 1일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미 에너지부 전문가 및 민간용역회사(NAC社) 관계자들이 북한측에 협력하는 형태로 5MWe 원자로에서 꺼낸 8,000여 개의 사용후 핵연료봉²⁶⁾을 밀폐 보관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를 완료한 상태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흑연감속로의 동결, 흑연감속로 및 부대시설의 건설중단과 최종적인 해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복귀, IAEA의 핵안전협정 이행 및 임시·일반 사찰 등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대북 핵선제 공격과 사용위협을 포기, 경제지원 및 1,000MWe급 두기의 경수로 공급 등을 약속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네바합의의 그 자체에 불만족하고 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핵활동 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는 명시되어 있으나, 또 다른 핵시설 건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존시설 해체 시기도 막연해 두기의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원자로나 재처리시설을 해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합의는 경수로공사 지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합의에 따르면 1기 경수로로는 2003년, 2기는 2004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수로 완공은 5년 이상의 지연이 예상된다. 때문에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문제와 보관장소 및 핵시설 해체에 드는 비용·처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답백과», p. 93. 한편 IAEA는 북한이 핵폭탄 1개의 제조에 충분한 8kg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동아일보」, 1998.5.30.
26) 핵탄 1개 제조에는 플루토늄 약 6~8kg 정도 필요하다.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p. 93. 따라서 8,000 개의 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 25~30kg이 추출될 수 있어 핵폭탄 4~5개를 만들 수 있다.

나. 미사일 프로그램

북한은 “우리의 미사일 강령은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²⁷⁾고 밝히면서 미사일 개발이 평화적 성격을 갖는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대응조치의 하나”²⁸⁾라 역설하면서 수많은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 이유를 들어 미사일을 개발해 오고 있다.

현재 북한은 Scud-B, Scud-C, Scud-D 중·단거리 미사일을 500~600기 정도를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²⁹⁾ 실제 탄두를 장착한 Scud-D 미사일 100기를 일본의 일부 지역과 주일 미군기지를 향해 겨냥하고 있다.³⁰⁾ 게다가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용으로 몇 기 보유하고 있으며 대포동 2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7) 「로동신문」, 2001.12.1.

28) 「로동신문」, 2001.12.1.

29) General Thomas Schwartz, Commander-in-Chief of U.S. Forces Korea, *Testimony before a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on the Department of Defense Fiscal Year 2001 Budget*, 15 March 2000; Hun Kyung Lee, “North Korea’s Missile Threat, and The U.S. Strategy,” paper presented at the University of Hawaii, sponsored by 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6 June 2001, p. 2;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Long-range Guided Weapons, Defense White Paper 1995~1996* (Seoul: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1996), p. 61.

30) Morton Abramowitz et al, “Report of the Independent Task Force on Korea,”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ereafter cited as Korea Task Force Report), 11 June 2001; *NHK*, 1997.9.21.

<表-2>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실태

종 류 (다른 명칭)	분 류	사정거리 (km)	탄두무게 (kg)	엔 진 수	최초비 행실험
Scud Mod A	SRBM	300	1,000	1	1984
Scud B (Scud Mod B)	SRBM	320~340	1,000	1	1985
Scud C (Scud Mod C)	SRBM	500	700	1	1989
No-dong 1 (Scud D, Scud Mod D)	MRBM	1,300	1,200	1	1997
Taepo-dong 1 (No-dong 2, Scud X, Scud Mod E)	MRBM	1,500~2,200	700~1,000	2	1998
Taepo-dong 2	LRICBM	4,000~6,000	700~1,000	2	2000

자료: Joseph S. Bermudez Jr., "DPRK Ballistic Missile Characteristics,"
3 March 1999; FAS, "Missiles," 25 August 2001.

SRBM: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단거리 탄도미사일 < 1,000km
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미사일 1,000~2,500km
LRICBM: Limited 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有限 대륙간탄도미사일 3,500~8,000km

구체적으로 북한이 보유 또는 개발중인 Scud·대포동 미사일과 그 성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진다(<表-2> 참조). 사정거리 320~340km에 달하는 Scud-B 미사일은 1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를 공격목표권 안에 두고 있다. 사정거리가 500km인 Scud-C 미사일은 0.5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전체를 겨냥한다.

사정거리가 1,300km에 달하며 ‘노동 1호’로 불리는 Scud-D 미사일은 한반도 전체와 일본의 니가타·오사카·동경,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 필리핀, 중국의 상해·북경과 대만의 타이베이까지 공격 사정권에 두고 있다. 이것은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간 뒤 재돌입하며 관성유도장치를 활용하는 탄도미사일이다.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다. 탄두 폭발력은 1~2메가톤, 탄두는 히로시마 타입으로 속도는 궤도 상부에서 최고 마하 9를 넘는다.³¹⁾ 이 미사일에 대해 미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실(NRC) 및 공군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노동 1호가 명중률이 떨어지고 유도 자치가 없어 효율적인 전략 공습용이라기보다는 테러용 무기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한다.³²⁾

더욱이 북한은 사정거리가 1,500~2,200km에 달하고 1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대포동 1호가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한다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미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대륙간 운반이 가능하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는 북한이 대포동 1호 위성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SLV)를 대륙간탄도탄으로 개조할 경우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할 정도로 정확하지

31) 러시아 참모본부 소속 군사전략연구센터의 비밀보고서(1993.10.22) 내용에서 인용 (이후 “러시아 비밀보고서”로 지칭), 『Newsmaker』, 1994.2.3, p. 23,

32) Paul Beaver, “Ten Nodongs Fielded But Accuracy Is Low, Says USA,” *Janes Defense Weekly*, 28 May 1997, p. 4.

는 않더라도 생화학 기제를 운반할 수 있는 소량의 유도탄 탄두(payload)를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³³⁾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기압과 지형의 요인들 때문에 화학탄도탄이 미국의 도시들을 크게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이며,³⁴⁾ 탄도탄미사일이 생물무기를 부착한 발사방식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³⁵⁾

이와 함께 북한은 성능이 우수한 2단계 대포동 2호(4,000~6,000km)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고 이것이 성공적이라 판단한다면 배치에 나설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대륙간탄도탄으로 개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실현화될 경우 수백 kg급의 유도탄 탄두를 미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미사일은 알래스카에 있는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서쪽 작은 섬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가벼운 탄두는 10,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 포에닉스, 애리조나의 북서쪽으로부터 메디슨, 위스콘신까지 미 본토 서쪽을 위협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³⁶⁾

33)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Foreign Missile Developments and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2015," (September 1999).

34) Michael L. Moodie, "The Chemical Weapons Threat," in *The New Terror: Facing the Threat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ed. Sidney D. Drell, Abraham D. Sofaer, and George D. Wilson (Stanford,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pp. 15~16.

35) Charles E. Costanzo, "Shades of Sentinel? National Missile Defense, Then and Now," n.d.

36) Members of the Commis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Executive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15 July 1998 (Pursuant to Public Law 201 104th Congress).

북한은 여러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 있는 북한 회사들을 통하여 탄도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원료와 성분 획득에 나서왔다.³⁷⁾ 북한이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걸프전이 계기가 된 것 같다. 김일성 부자는 걸프전 때 미군측이 구사한 이라크군 거점에 대한 핀 포인트 공격 위력을 실감하고 급히 대포동 1호의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추측된다.³⁸⁾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정확한 순항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종래의 액체연료방식에서 탈피해 이라크의 Scud 미사일과 같이 이동가능한 고체연료 타입의 코킷으로 변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³⁹⁾ 미사일 발사명령후 발사가 액체로켓보다 고체로켓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은 원료로 원거리 운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鐵로 만들어진 몸체를 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으로 교체하는 미사일 개량작업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장거리 미사일의 궤도를 조정하고 유도전파를 수집 해독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⁴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대상권에 들어 있는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로 추정되는 로켓을 시험 발사하였다.⁴¹⁾ 그것은 일본과 한국을 겨냥한 위협이었으며 장거리 탄

37) "CIA Annual Report from 2001."

38) "러시아 비밀보고서," 『Newsmaker』, 1994.2.3, p. 23.

39) 위의 글.

40) 『연합뉴스』, 2001.12.4. 대포동 2호의 유도제어 장치도 북한이 자체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1)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김정일 총비서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개발발사에 직접 참여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소속 3인의 과학자(김중순, 유영진, 김찬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이 인터뷰는 중국 人民日報社의 평양 주재 특파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위성 발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영명하신 김정일 총비서의 지도 결과"라 밝힌 김찬호 연구원의 발언은 이를 보다 분명히 해주고 있다. 『環球時報』, 1998.10.25.

도미사일에 의해 미국의 도시를 강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 뒤 북한은 미국과의 오랜 협상 끝에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중 미사일 실험발사를 중단할 것”⁴²⁾을 선언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북·미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페르손(Goran Persson) 스웨덴 총리를 통해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moratorium)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이후 북한은 6월 넷째 주 1998년 미사일을 발사했던 동북 해안의 어떤 장소에서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시험을 실시했다. 이는 기존의 엔진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엔진을 시험한 것일 수도 있다.⁴³⁾ 하지만 이러한 지상 시험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기⁴⁴⁾ 때문에 북한이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유예조치를 유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외화획득을 위해 미사일 기술·수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⁴⁵⁾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외화벌이 목적과 함께 수입국가들로부터 개발자금원조를 받아 더욱 성능이 뛰어난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러한 목적과 함께 북한은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중동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사일을 수출해 왔다.⁴⁶⁾ 북한이 이란·시리아·리비아 등에 탄도미사일 장비를 수출하고

42) 「중앙방송」, 1999.9.24.

43) *Washington Times*, 3 July 2001.

44) *AFP*, 6 July 2001.

45) *Washington Post*, 5 July 2001.

46) 파키스탄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1980년대부터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등 중동국가에 연간 10억 달러 어치의 각종 미사일을 수출해 왔다. *Radio Free Asia*, 28 May 1999. 그리고 북한이 중동지역에 판매한 미사일은 이란 202기, 시리아 150기, 이라크 100기, 자이르 18기에 달한다. 「국회통일외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1996.9.25; 「한국일보」, 1996.4.22; 「중앙일보」, 1999.3.28; *Defense News*, 1~7 Sept.

1996년 하반기 이집트에 Scud 미사일 장비를 공급한 것이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99년 상반기엔 중동과 아프리카에⁴⁷⁾ 그리고 2000년 하반기엔 중동, 남아시아, 북아프리카에 탄도탄미사일 관련 장비, 재료, 기술적 지식 수출을 계속해 왔다.⁴⁸⁾

파키스탄이 개발하여 발사실험에 성공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우리(Ghauri, 사정거리 1,500km)의 실험영상 분석을 통해 대포동 1호임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이란의 사하브-3(Shahab-3, 사정거리 900mile)은 노동 미사일의 기술에 의한 것이며, 사정거리 1,200mile에 달하는 이란의 사하브-4 미사일과 파키스탄의 가즈브나비(Ghazvnavi) 미사일은 대포동 1호 미사일 기술지원에 의한 것이다.⁴⁹⁾ 이러한 사실들에 미국은 놀라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 생화학무기

북한은 단순한 제조기술과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생산할 수 있고 막대한 살상효과를 지닌 생화학무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1954년부터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아 同 무기를 개발·생산해 왔다.

북한은 “미국이 저들의 생화학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있지도 않는 우리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터

1997.

47) “CIA Annual Report from 2000.”

48) “CIA Annual Report from 2001.”

49) Richard D. Fisher, Jr., “Time to Stop North Korea’s Missile Blackmail,” *The Heritage Foundation Executive Memorandum*, no. 550 (September 1998); “The Missile Threat,” *The Economist*, 31 July 1999, p. 15; Aidan Foster-Carter, “The Koreans,” *Asia Times*, 5 June 2001.

무니없이 걸고 들고있다”⁵⁰)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는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이자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북한이 대량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북한을 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 등 중동의 적성국가와 함께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1962년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 이후 소련의 지원 하에 화학무기 개발·생산을 가속화해 왔다. 현재 북한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제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학무기는 자료·정보입수가 용이하고⁵¹) 제조기술이 단순하다. 게다가 제조비용이 저렴하다. 반면 엄청난 살상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난한 국가가 선호하는 무기며 ‘약소국의 핵무기’ 또는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로 여겨진다. 따라서 북한은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화학무기 보복공격 능력’⁵²)의 억제력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핵폭탄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화학무기에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확산에 나서고 있다.

화학무기는 전시에 적을 살상하거나 무능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성화학물질로 통상 독가스로 일컬어진다. 同 무기는 스프레이나 폭탄 등에 의해 밀립이나 동굴 그리고 산악지대 등 접근이 힘든 곳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同 무기 사용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다.

50) 『민주조선』, 2001.12.11.

51) 특히 화학무기는 각종 화학 작용제 합성에 대한 반응 조건, 속도, 메커니즘 및 촉매 등 반응 조건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자료를 인터넷 또는 화학 전문 서적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어 제조가 보다 용이하다. 정우영, “화학 및 생물무기 테러 대응정책,” 『화생무기의 국제적 위협실태 및 대처방안』 (제11회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 2001.10.12), p. 25.

52) 화학무기 억제력에 대해선 Manfred R. Hamm, “Deterrence, Chemical Warfare, and Arms Control,” *ORBIS* (Spring 1985), pp. 119~161.

그렇지만 화학무기는 개방된 지역에서 일반 폭탄보다 살상력이 낮으며 파괴력의 결핍으로 살상무기로써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同 무기 사용이 장기간 오염을 가져다주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지형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변적이며 화학무기의 종류에 따라 이상적 지형 및 기상조건이 상이하고 표적의 방호상태에 따라 화학무기의 효과는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다.⁵³⁾

북한은 이러한 화학무기를 다량 개발·생산하고 있다. 생산능력은 평시에 연 4,500톤, 전시에 12,000톤까지 가능하다.⁵⁴⁾ 함흥의 2.8 비닐론 공장과 홍남·순천·안주·신의주·만포·청진·아오지 등 8개 비료공장에서 사린(Sarin), VX-3, 염화시안, 청산제, 겨자가스, 포스젠 등 신경성·수포성·혈액성·취루성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사린은 신경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오염되자마자 15분 이내 사망시키는 치명적 화학물질이다. 그리고 VX-3은 피부에 미세량이 닿아도 4분내 사망케 하는 맹독성의 신경작용제이다.

북한은 이들 화학무기들을 황촌·신음리·사리원·옥장봉·신흥동·삼산동 등 최전선의 전용 저장소와 1·2·4·5군단 등 최전방 야전부대에 집중 배치해 놓고 있으며 나머지는 마람, 지하리 등의 지하 특수시설에 보관하고 있다.⁵⁵⁾

북한은 다양한 화학탄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위협적이다. 따라서 생화학무기를 적재한 미사일을 50개만 발사해도 1,200만 명의 서울 인구 중 400만 명이 희생될 것으로 추정되며,⁵⁶⁾ 사린 4~5kg을

53) 조이식, “화학무기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의 成立 背景과 履行 展望,” 『한반도군비통제』 (서울: 국방부, 1994), p. 28.

54) 하루 15.2톤(전시 4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진 초기 방사포나 유도탄, 야포 등을 이용해 70톤 가량의 화학무기를 수도권 공격에 동원할 수 있다. 『한국일보』·『조선일보』, 1997.8.18; *Radio Free Asia*, 2 April 1999.

55) *Jane's Intelligence Review*, 1 Aug. 1996.

서울 상공에 살포할 때 한국 전체인구의 1/2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일순간에 전멸하고 Scud 미사일이나 Frog 미사일을 사용하면 전국을 대혼란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⁵⁷⁾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북한 생화학탄의 일부만을 격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다발성 공격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한마디로, 북한이 생화학무기와 미사일만 가지고도 엄청난 살상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화학무기 생산과 함께 북한은 생물무기 확산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공격적 생물전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인도·이라크·러시아·유고슬라비아 등과 함께 세균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함남, 홍남 등 6곳에⁵⁸⁾ 위치한 대학, 의학연구소, 특별 연구소 등지에서 생물무기 연구시설을 두고 있으며, 주로 악성 탄저균, 콜레라균, 腺 페스트균 등을 연구하고 있다.⁵⁹⁾ 同 무기 생산은 평북 정주, 서해상의 한 섬, 강원 문천 등 3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⁶⁰⁾

이러한 생물무기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을 통해 북한은 생물무기 개발·생산에 나서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와 보유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균무기로 규정된 바이러스는 24종류 중 북한은 콜레라, 탄저균, 페스트,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켓차, 섹시톡신,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이질, 발진티푸스, 결핵 등 13종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결정한다면 몇 주일 안에 충분한 양의 세균무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⁶¹⁾ 생물학무기 생산능력은 연간 약 1,000

56) 「연합뉴스」, 1999.11.2. 한국군은 북한이 2톤의 화학무기를 사용해 서울시 인구밀집 지역에 기습공격을 할 경우 20여만 명의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조선일보」, 1997.9.9.

57) SAPIO, 1997.6.25.

58)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p. 32.

59)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Nonproliferation Project,” www.stimson.org/cwc/bwprolif.htm.

60)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p. 32.

톤에 이른다.⁶²⁾

이들 세균 중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한 탄저균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최우선 생물학 무기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연간 1톤의 탄저균 생산능력을⁶³⁾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배양이 가능하다. 탄저균은 건조된 孢子 상태를 띄고 있는 데다 취급이 쉬워 최근 북한 및 일부 국가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저균의 치사율은 80% 이상, 이틀 안에 50%가 사망하며, 100kg을 인구밀집지역에 살포하면 무려 100만~30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는 세균무기이다.⁶⁴⁾

이외 천연두 바이러스(Variola Virus)는 전염률이 매우 높으며, 치사율이 15~40%에 달한다.⁶⁵⁾ 콜레라, 이질 등도 전염률이 높으며, 특히 섹시톡신(Saxtoxin)은 감염후 몇 시간 안에 사망시킬 수 있는 독소에 해당된다.

북한은 1954년 이후 여러 곳의 전문 연구소 및 무인도 실험장에서 관련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구소

61) Statement of The Honorable John R. Bolton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o the Fifth Review Conference of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Geneva, Switzerland, 19 Nov. 2001.

62) 『세계일보』, 2001.10.17.

63) 『중앙일보』, 1999.5.13.

64) 『중앙일보』, 1999.5.13; 『경향신문』, 2001.10.10. 197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50kg의 탄저균을 인구 500만 명의 도시 상공에 뿌릴 경우 25만 명이 감염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1993년에 나온 또 다른 보고서는 100kg의 탄저균을 미 워싱턴 상공에 뿌릴 경우 13만 명에서 3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간중앙』 (2001년 11월). 아울러 탄저균 6kg이면 인구 60만 명의 도시 인구를 모두 사망케 할 수 있다는 가상의 계산도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2001.10.15.

65)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p. 45. 천연두균 10g이면 2~3일 이내에 500만 명 이상을 병들게 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01.10.14.

런 및 일본으로부터 페스트, 콜레라, 탄저균 등 병원균과 세균여과관 등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재래식 생물학 작용제 생산능력을 갖게 됐다.⁶⁶⁾ 또한 黄牛독소, 뱀독 등 천연독소를 생물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⁷⁾

특히 북한과 같은 빈국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 때문에 생물무기를 선호하고 있다.

첫째, 화학무기, 핵무기에 비해 개발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전쟁무기로 일인 살상에 필요한 평균비용을 계산해 볼 때, 재래식 무기는 2,000달러, 핵무기의 경우는 800달러, 화학무기의 경우는 800달러가 드는 반면 생물무기는 1달러밖에 들지 않는다.⁶⁸⁾

둘째, 생물무기가 효율적으로 살포될 경우 화학무기에 비해 최소 1만 배 이상의 살상력을 가진다.⁶⁹⁾

셋째, 생물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목표로 선언된 집단의 대중적 불안과 공황상태가 초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붕괴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⁷⁰⁾

넷째, 생물무기는 무향·무취하고 눈에 띄지 않아 사용하기 좋으며, 공격지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2일에서 5일이 지난 후에 서서히 효과를 보이면서 상대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적은 양으로도 확실한 감염이 가능하고, 높은 발병력과 짧은 잠복기, 낮은 전염률과 면역성, 제조 및 저장 용이성과 안정성, 확

66) "CIA Report," cited in *Chosun Ilbo*, 21 Nov. 2001.

67) Ibid.

68) 강명근, "생물무기에 의한 공격위협 현황과 대비 및 대응방안의 모색," 『화생무기의 국제적 위협실태 및 대처방안』 (제11회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 2001.10.12), p. 59, 註 3 참조.

69) 정우영, "화학 및 생물무기 테러 대응정책," p. 19.

70) 강명근, "생물무기에 의한 공격위협 현황과 대비 및 대응방안의 모색," p. 60.

산 용이성 및 외부환경 조건에 대한 높은 생존성(열, 빛, 건조, 충격 등) 등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백신, 항생제 등 치료방법이 존재하나 기타 통상적인 치료법은 비효과적이다.⁷¹⁾

여섯째, 생물무기는 쉽게 은닉 잠입하여 살포할 수 있으며 살포와 그로 인한 인명의 손상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 초기에 감지하기 어렵고, 소량으로 치사량이 되며, 한번 오염되면 스스로 번식 확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⁷²⁾

일곱째,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은 그것을 발사한 장소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즉시 반격을 가할 수 있지만 생물무기의 살포는 자연발생적인지 인위적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누구의 소행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반격을 가할 만한 표적이나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⁷³⁾

이러한 생물무기의 특성 때문에 빈국 외에도 군사전력이 상대국에 비해 확연히 열세인 국가나 테러를 위협·공포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불량국가들은 이들 무기를 더욱 선호하는 추세가 있다.

생물무기 확보가 용이한 점도 同 무기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물무기 제조시설의 소형화가 가능하며 제조기술이 간단하고 제조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제조가 쉬운 점이 한 이유이다. 보다 상세하게 생물무기의 확산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진다.⁷⁴⁾

첫째, 병과 독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세균은 생물학연구소에서 흔히 이용되는 것으로 구입이 쉬운 데다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으

71) 정우영, “화학 및 생물무기 테러 대응정책,” p. 19.

72) 강명근, “생물무기에 의한 공격위협 현황과 대비 및 대응방안의 모색,” p. 59.

73) 위의 논문, p. 60.

74) Jonathan B. Tucker, “The Biological Weapons Threat,” *Current History* (April 1997), p. 16.

로 죽은 동물 사체나 토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둘째,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백신 생산공장에서도 유사시 무기 생산 기지로의 전환과 동시 잠재생산 능력까지 보유할 수 있다.

셋째, 수일 내지 수주 이내에 종자에서 군사용 물질 배양이 가능함으로써 사용 바로 직전에 제조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사전 비축해 둘 필요가 없다.

넷째, 세균배양기술의 발달로 오로지 살아있는 동물세포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소량생산도 어려웠던 단백질 독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는 자연상태에서만 발생·활동해 온 세균물질들을 이제 실험실에서 전염강도 및 치료제에 대한 저항력, 환경에 대한 내성 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생물무기가 대규모로 실전에 사용된 예가 없어 전략·전술적 효용성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제한적 전술운용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것이다. 대체로 공격지역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몇 주간 내지 몇 달간 사람의 감각으로 인지되지 않은 채 서서히 전염시키면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병균에 감염된 후에도 발병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 저기를 전전하며 병균을 옮길 수 있다. 또한 동식물 병원균은 상대의 군량미나 가축에까지 침투해 전염시킬 수 있어 상대국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3. 재래식 군사력 실태

심각한 식량난·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북한은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사비는 13억 달러로 총 예산의 25~33%에

달하며,⁷⁵⁾ 이는 총 산업투자의 약 50%에 해당된다.⁷⁶⁾ 이러한 수치는 북한의 군사비 규모, 전력증강 실태, 군사력 운용 규모 등이 엄청나다 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군사력 증강으로 경제에서의 자립정책은 실패 했으나 군사에서의 자위는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자위적 국방력 확보란 군사적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병력 117만 명(지상군 100만, 해군 6만, 공군 11만), 상비병력 748만여 명과 함께 전차 3,800여 대, 장갑차 2,300여 대, 야포 125,000여 문, 수장전 430여 척, 지원함 470여 척, 잠수함(정) 90여 척, 전술기 840여 대, 지원기 840여 대, 헬기 29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⁷⁷⁾ 특히 육군의 군사력은 세계 3위에 달할 정도로 막강하며 10만 이상의 특수전 수행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⁷⁸⁾ 게다가 대부분의 군사력은 지하시설로 보호되어 있다.

남한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은 지상군 44만 명, 공군 47,000명 상비병

75)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196; CIA, "The World Factbook: Korea, North," 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kn.html.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0기 3차 회의(2000.4)에서 2000년도 국방비를 국가 총예산의 14.5% 수준인 13.6억 달러로 발표한 바 있다.

76) *Defense News*, 1~7 Sept. 1997, p. 3.

77)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pp. 196~199; 국방부, 『국방백서 2000』, 제3장 3절; 송대성,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군비경쟁적 요소와 군비통제적 요소," 백종천·송대성, 『2000년대초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성남: 세종연구소, 2001), p. 55.

78) The U.S. Secretary of Defense, "2000 Report to Congress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약 10만 여명에 달하는 특수전 부대는 유사시 전·후방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지휘 및 통신 시설 파괴, 병참선 차단, 비행장 등 주요시설 타격, 요인암살 등으로 우리의 전쟁지속능력을 파괴하고 후방지역을 교란하는 등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 『국방백서 2000』, p. 40.

력 444만 명, 전차 1,440여 대, 야포 6,300여 문, 수상전 270여 대, 지원함 450여 척, 잠수함(정) 80여 척, 전술기 300여 대, 지원기 610여 대 등이 과도하게 많다. 질적인 측면에서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월등하다. 이러한 남북한의 군사력은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군사력 증강과 함께 북한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과 함께 북한군의 전방기지 병력배치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10여 개 군단, 60여 개 사단/여단, 함정 60%, 전투기 40%의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으며,⁷⁹⁾ 남부지역에 지대공 미사일기지, 휴전선 근접 지역에 방사포 및 장거리포대를 증강배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500여 기의 장거리포를 포함해 12,000여 문의 대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들 포의 이동 없이 매 시간 500,000 발을 수시간 동안 한·미연합군을 대상으로 포격할 수 있다.⁸⁰⁾

뿐만 아니라 전 전선에 ‘갱도화진지’를 구축, 독립전투를 가능하게 하고, 여러 땅굴을 파 놓고 개전시 대규모 부대(특히 특공부대)를 투입, 전면 기습공격을 통해 유리한 군사상황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 전개는 억지용이나 방어용이라기보다는 공격용이기 때문에 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군이 방어준비와 대응전략을 강구하기도 전에 ‘공세전략 교리’⁸¹⁾로 속전속결, 선제기습공격, 총력전과 정규전·비정규전의 배합

79) 위의 책, pp. 40~42.

80) The U.S. Secretary of Defense, “2000 Report to Congress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81) 이는 야간침투와 포위중심 목표공격을 강조하는 군사교리를 의미한다.

전략을 가지고 전면기습 공격을 통해 전쟁주도권을 장악하고 전후방을 동시 전장화해 전쟁을 종결한다는 공격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반도전쟁을 가상한 컴퓨터실험 결과에 의하면, 만약 북한이 전쟁을 개시하면 1~2주 내 서울을 점령할 가능성이 있고,⁸²⁾ 국방부는 1주일 이내에 2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개월이 되면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시설의 90%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⁸³⁾ 남북한의 현재 군사력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때 전쟁시 전 국토는 거의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82) *Newsweek*, 22 Nov. 1993.

83) 국방부, 『90-91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1990), p. 127.

Ⅲ.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미국의 전략

1. 검증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략

부시 행정부는 신국제질서 하에서 힘과 함께 군대는 평화유지의 강력한 방패이자 확실한 칼임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의 진보에 기반한 군대를 구축해야 하며 강력한 군대를 통해 적들을 압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화당의 전통이념인 ‘미국적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적 국제주의’는 미 국익에 기초한 국제주의를 의미하며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적과 동지를 분명히 구별해 대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힘과 권위를 세계무대에 과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면 협상을 하되 불응하면 응징을 가하는 “공격과 나쁜 신조에 대해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⁸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위기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동맹국을 도우며 그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형성하려 한다. 반면 중국과 같은 잠재적 적대국과 북한·이란·이라크 등 소위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자 한다.

최근 윌포위츠(Paul Wolfowitz) 미 국방부 부장관은 장래 미국의 최대 군사적 위협 국가로 북한과 이라크를 꼽고 있다.⁸⁵⁾ 그리고 미 국방부는 북한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

84) *President George W. Bush's Inaugural Address*, 20 Jan. 2001.

85) Deputy Defense Secretary Paul Wolfowitz's Interview on *CNN's "Evans, Novak, Hunt & Shields"* on 28 July 2001.

협하는 세계 3번째 국가로 간주한 바 있다.⁸⁶⁾ 아울러 미국은 북한을 지역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국제 무법자로 분류하면서 힘의 노선을 토대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의 새로운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과 함께 ‘확고한 목표’(firm in goals)와 ‘전술적 유동성’(flexible in tactics)을 가지고 있다.⁸⁷⁾

미국은 핵·미사일 및 그 운반수단의 전면적인 확산으로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계 및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전략은 북한, 이라크 등 소위 불량국가들로부터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반확산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비확산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반확산은 군사적 해결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정책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기술이전 통제와 경제·외교제재·교섭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반면 후자의 정책은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며, 상대국이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해 올 경우 군사적 대응을 조치하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불량국가로 간주하는 북한에 대해 비확산과 반확산 정책을 동시에 모색하면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미국은

86)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미 국가 안보에 대한 WMD 확산 위협 평가표’에서 러시아는 5점, 중국은 4점, 북한·이라크·이란 등 3개국에 대해선 3점을 배당하면서 북한을 제3위의 국가안보위협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동아일보』, 2001.12.5 참조.

87) James A. Kell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Nomine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Confirmation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hereafter cited as Kelly’s Confirmation Hearing), Senate, 26 April 2001.

냉전종식으로 핵전쟁의 위험은 감소했지만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무기 및 가공할 만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불량국가 북한이 미국 및 동맹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간주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려 한다.

특히 911테러사건 이후에는 테러지원국으로 간주되는 북한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 미 국무부는 북한이 테러조직들과 연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테러조직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무기를 판매해 왔다고⁸⁸⁾ 결론지으면서 북한의 테러지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를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⁸⁹⁾ 북한과 이라크와 같은 불량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테러지원에 사용할 경우 이들 국가들 역시 테러국으로 간주,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테러는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이며 미국이 병커와 철책 뒤에 웅크리고 있는 태도를 취한다면 테러리스트들이 승리를 견게 될 것이기⁹⁰⁾ 때문에 반테러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함을 확실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88) U.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Report-2000" (April 2000). 그 이전의 1999년 연례보고서는 북한이 빈 라덴 및 그의 조직과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추정에 불과해 2000년 보고서에 그 내용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북 불신과 북한과 테러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취급하면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다른 차원에서 이 보고서는 이란·이라크·리비아와 달리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후보군에 분류하고 있다.

89) Ron Fournier, "Bush Warns Iraq, N.Korea on Weapons," *AP*, 27 Nov. 2001.

90) Colin L. Powell, *Hearing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Commerce, Justice, State and the Judiciary*, 8 May 2001.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실태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사찰을 위한 국제사찰단의 입국 허용과 이들 무기의 개발·확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⁹¹⁾

한편 미국은 “군부를 비롯한 북한의 지도층이 북한의 내부 상황을 극복·해결할 유일 최선의 방안으로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⁹²⁾이 있다고 보며, 이는 남북한, 미국·일본·중국의 전쟁개입 가능성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은 그들의 통제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북한의 군사력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질서 유지에 위협요인이 된다고 보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억지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채택된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 Line)을 기본 축으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⁹³⁾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의하면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자위대는 작전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작전협력 분야(기뢰제거, 대잠수함용 무기·탄약 제공, 탄약 수송, 실종병사 수색 구조), 부대운용지원 분야(기지·항만 정비,

91) Mike Allen, “Iraq’s Weapons Could Make It a Target, Bush Says,” *Washington Post*, 27 Nov. 2001.

92) *Washington Times*, 24 April 1997. 레이니(James T. Laney) 전 주한 미대사 역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북한이 계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군부의 낙담에서 우발적으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Washington Post*, 17 Jan. 1997.

93)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이 지역에서 중국군사력의 확장을 저지하고자 하는 한편, 미·중간 정치·군사적 마찰이 생길 때 일본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전략미사일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으로 일본에 미사일방위 계획에 참가하도록 촉구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일본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 하고 있다. Stephen A. Cambone, “The United States and Theatre Missile Defence in Northeast Asia,” *Survival* 39, no. 3 (Autumn 1997), pp. 66~84 참조.

주파수 배정과 이동통신 차량제공, 선박수리시설 이용 등), 시설사용 분야(미군기의 이·착륙, 함정의 출입항을 위한 각 민간공항과 항만의 사용)와 기타 분야(미군병사예의 급식, 숙소 제공, 한반도로부터의 난민후송 및 수용시설 공여) 등 작전수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미군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⁹⁴⁾ 이러한 미·일간 안보협력은 양국 안보동맹 관계만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체제에 대해 어떠한 환상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⁹⁵⁾ “김 위원장이 불량하게 행동하면 보상받지 못할 것이며 그가 선량하게 행동하면 보상받을 것”⁹⁶⁾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주민을 돕고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⁹⁷⁾ 다시 말해 북한이 열망의 진지성을 보여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될 때 미국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은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략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방식대로 북한을 달래고 북한의 페이스대로 미·북협상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응 수위는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란 기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시 진영은 북한의 구체적 약속 이행을 확인한 후에 다음 협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방식을 지향할 것이며 ‘투명성’

94) 『毎日新聞』, 1997.5.16.

95) Colin L. Powell, *Testimony at Budget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House of Representative, 7 March 2001.

96) Remarks by Condoleezza Rice, cited in *Chosun Ilbo*, 17 May 2001.

97) *President Bush's Statement*, 7 June 2001.

(transparency) 확보와 ‘철저한 검증’(complete verification)을 토대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비밀에 싸이고, 자유와 언론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와의 협정 체결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이는 곧 북한이 변화했다는 확신을 안기려면 협상이든 협정이든 투명성을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시 미국 협상팀은 대북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준수하면서 거래형식의 정치적 협상을 지양하고 자국의 주도 하에 협상을 이끌어 가려 할 것이다. 부시 진영의 팀은 협상의 틀을 타결한 뒤 실무자들에게 검증문제를 맡기려 했던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미사일문제, 핵사찰 및 안전기준 이행,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한 협상에서 감시, 투명성, 상호주의에 비중을 두면서 그 이행까지 검증하려 할 것이다. 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란 확고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며, 전술적 유동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려는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미국이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다.

2. 사안별 세부 전략

가. 핵사찰과 제네바합의 검토

미국내 대북 강경파들 중 일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가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이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온건파들은 합의 파기는 미·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일본의 대북정책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북 강경 공화당 인사들은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위해 경수로 공급지원과 1기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합의는 북한의 협박을 보상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 이러한 합의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합의에 따른 중유제공 비용이 국제 유가상승으로 1995년에 비해 4배가 올라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는 외교적 선례를 존중하고 제네바합의 파기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먼저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 국무부는 “북한이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제네바 기본 합의하의 약속들을 이행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⁹⁸⁾임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미·북간 합의를 전제로 수정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그 골격은 지켜나갈 것이다.⁹⁹⁾ 다만 제네바합의 유지와 관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¹⁰⁰⁾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북한이 핵사찰에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제네바합의 재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자면 부시 행정부는 합의의 틀은 유지하나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의 방향을 잡고 있다. 그것은 경수로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경수로의 핵심 부품이 제공되기 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사찰이 희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수로에서의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IAEA의 사찰을 먼저 받는 방향으로 합의가 개선되어야 하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98) *U.S. Department of State Daily Press Briefing*, 9 March 2001.

99) *Kelly's Confirmation Hearing*, 26 April 2001.

100) Remarks by James A. Kelly, “Transcript: U.S., Japan, S. Korea Share Views on North Korea, *Washington File*, 30 May 2001.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경수로 대신 화력 발전소를 짓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60만kw급이 될 것이다.¹⁰¹⁾ 그러나 화력 발전소 건설 역시 쉽지 않다. 화력 발전소는 비용 면에서 경수로 2기의 건설비용인 46억 달러보다 10억 달러 정도 적게 들지만, 연료비는 원전의 경우 kw당 3원 50전인 반면 화전의 경우 중유는 35원 21전, 유연탄은 14원 51전이 든다.¹⁰²⁾

화력발전소 건설은 미국·한국·일본·유럽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건설비용과 완성된 뒤 연료제공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뒤따른다. 이미 미 정부는 화전 건설을 위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 같다.¹⁰³⁾ 하지만 북한이 경수로의 화전 대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사찰수용을 위해 북한주민지원, 전력공급 등을 당근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평양이 연료봉 제거와 IAEA의 무제한적인 사찰과 IAEA의 ‘강화된 안전기준’(enhanced safeguards)에 동의한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대규모의 대북지원과 “단기간 안에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력공급에 나설 수”¹⁰⁴⁾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경수로 한 기를 화전발전소로 대체하거나 두 기 모두를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추가로 화전 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첫째 안, 둘째 안은 제네바합의를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북한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안은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가로 줄 수 있는 엄청난 당근이며 전력문제 해결에 상

101) 『日本經濟新聞』, 2001.5.10.

102) 『중앙일보』, 2001.5.7.

103) 『日本經濟新聞』, 2001.5.10.

104) Morton Abramowitz et al, “Korea Task Force Report,” 11 June 2001.

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당국은 미국이 2003년까지 넘겨주기로 한 200만kw 경수로의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분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흑연감속로(원자로)를 되살리는 정황이 조성되지 않을 수 없다¹⁰⁵⁾는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표명한 바 있다. 이는 북한과 핵·미사일 문제를 논하자는 메시지로 ‘미국과의 거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전력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대북전력 제공이 북한군의 전력 증강에 이용될 수 있으며, 북한이 IAEA와 협조할 동기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전력 제공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북대화에서 양측은 핵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논할 것이다. 미국은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 연료용 중유 제공과 경수로 공급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결대상에서 제외된 민감한 시설에 대해 IAEA의 사찰 재개를 허용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할 것이다. 그것은 주로 고체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위장공원 시설’과 액체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남쪽 건물’(Building 500)이 될 것이다.¹⁰⁶⁾ 이와 함께 ① 8MWe의 실험용 열증식로(영변에 있는 동위체 생산과 연구용 연자로), ② 영변에 있는 핵연료봉 저장시설, ③ 북한내 산재된 소량의 핵물질이 있는 약 30개 지점, ④ 영변에 있는 동위체 생산용의 ‘임계집합체’와 평양에 있는 ‘임계미만집합체’ 2개 시설¹⁰⁷⁾ 등에 대해서도 사찰을 요구할 것이다.

105) 『조선중앙통신』, 2001.5.16. 경수로 공급 지연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북한이 거론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흑연감속로 재가동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106) ‘위장공원’은 핵폐기물 시설 위에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IAEA는 의심하고 있다. ‘남쪽 건물’은 IAEA가 1993년 1월 사찰을 요구했다가 군사시설이라며 거부당했던 곳이며, 높이 18m, 폭 24m, 길이 67m의 건물이다. 『중앙일보』, 2001.5.26.

107) 『世界週報』, 1998.9.29.

IAEA의 특별사찰의 조기 실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미국이 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수로 한 기를 화전발전소를 대체하는 방안과 두 기 모두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시키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구상한 안을 강제로 밀어붙일 경우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미국이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폐연료봉 반출을 연기하면서 체제 수호를 위한 핵카드를 미국을 대상으로 재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북·미는 대결·갈등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파기해 핵개발 계획을 재개할 경우 4개월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미 정부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이 봉인하고 있는 핵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에 3주간, 이를 핵폭탄화해 항공기에 탑재하기까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¹⁰⁸⁾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 계획의 과거를 알아보기 위한 IAEA의 연료봉 시료채취를 허용하고 미사일 개발과 기술·부품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전력공급과 송배전망 건설 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대규모 식량지원, 경제지원, 관계개선까지 가능할 것이다.

나. 미사일 개발·생산·수출·배치 중단

미국은 냉전종식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감소했다고 보지만 테러지원국이자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상대를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의 전략은 계산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본다. 미국은

108) 『日本經濟新聞』, 1999.8.20.

러시아를 더 이상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위협은 오히려 북한·이라크·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로부터 오며, 이들의 공격은 우발적·자살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부시 행정부는 위협이 냉전시대보다 더 분산되었다고 보며,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세계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를 포함한 조치들에 대해 동맹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 간에 협의해 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¹⁰⁹⁾ 미국은 미사일 기술의 확산으로 북한·이란·이라크와 같이 실패한 국가가 쉽게 미사일을 가질 수 있고 자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명분을 들어 MD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은 화학 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결정적으로 방어력에 결함이 있다면서, 대안으로 공중 레이저(airborne laser) 무기를 배치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¹¹⁰⁾ 이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조기 발견해 레이저 발사 가능한 비행기가 공중에서 레이저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공중 발사 레이저 무기가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도 격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을 강제로 저지하기는 어렵다. 미·북간 합의시 미사일 개발·수출을 제한할 어떠한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했다. 더구나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해 자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응당한 자주권 행사”¹¹¹⁾란 입장을 고수할 때

109) Remarks by the President to Students and Faculty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 May 2001.

110) Paul Wolfowitz, *Prepared Testimony on Ballistic Missile Defense to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12 July 2001.

111) 『조선중앙방송』, 1999.9.15.

미사일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수출이 미국의 동맹국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미국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긴요성을 갖는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 저지에 주력할 것이다. 미 정부는 이스라엘 안보를 염려하는 미국내 유태계를 의식해서라도 중동의 적성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해야 할 긴요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중동 적성국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이 동맹국 이스라엘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미사일방어협정』(1996.4.28)을 체결한 상태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모든 미사일공격에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새 레이저방어무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담고 있다. 실제로 중동의 적성국가들이 사정거리 300km가 넘는 북한제 미사일을 손에 넣을 경우 이스라엘의 안보는 위협에 처해 진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을 위해 적정 보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북간 협상에서 북한은 대중동 국가에 대한 미사일무기 수출중단 대가로 3년간 10억 달러씩을 미국에 요구한 적이 있다.¹¹²⁾ 이에 대해 클린턴 진영의 협상팀은 ‘현금보상 절대 불가’란 원칙 하에 북한의 제의를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현금보상 대신 이에 준하는 보상, 예를 들어 식량·생필품지원, 추가 경제혜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의 수혜국이 될 일본·이스라엘과 함께 보상을 마련할 것이고, 추가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을 계속한다면 계획한 대북지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추가 제

112) *Washington Post*, 14 March 1999;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 April 1999.

재완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사일 장비를 실은 배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사일 개발·수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국은 협상에서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가입에 초점을 둘 것이다. MTCR은 사정거리 300km, 탑재중량 500kg을 초과한 미사일 완제품이나 무인항공시스템과 그 생산설비의 수출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미사일 개발이 북한의 체제수호,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협상카드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순수히 응할 리가 없다. 이 때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주권사항임을 주장할 때 미국이 적절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또한 미사일이 안보의 문제이지 합법성의 문제가 아니기¹¹³⁾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은 협상시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전제로 한 맞교환식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시 모색된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인공위성 대리발사’ 방식은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북측에 제공하는 위성발사 기술이 미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사일 수출·개발 중단-인공위성 대리발사 및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식의 맞교환 방식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 방식을 수용하면, 미국은 북한이 발사체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인공위성을 대리발사하는 방식을 채택하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추가 보상책으로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간접 대북지원에 나설 것이다.

113) Abramowitz et al, “Korea Task Force Report,” 11 June 2001.

당분간 미국은 반테러 국제연대에 치중하면서 MD 체제 개발 명분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미·북간 협상을 이끌어가려 할 것이다.¹¹⁴⁾ 때문에 미국은 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테러지원 문제, 생화학무기 문제, 재래식 군사력 문제 등을 부각시키면서 미사일협상의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다.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대처하고자 한다. 첫 단계로 미국은 북한에 핵·미사일 문제와는 별도로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유엔군과 북한 간의 장성급회담이나 한·미·중·북 4개 국 협의와는 별도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화학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1997년 4월 29일 발효된 『화학무기협정』(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¹¹⁵⁾에 북한이 가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이전·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사찰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무기 관련기술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화학무기와 생산시설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에 가입하면 다른 회원

114) 미국은 MD 추진을 위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문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미 공화당이 군산복합체로부터 민주당보다 3배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시 행정부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고려해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쉽게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15) 1993년 미국의 주도로 체결되었으며 170개 국이 서명하였다. 의회 비준 절차를 마친 국가는 135개 국이다. 북한·리비아·이라크·시리아 등은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국에 국제 사찰팀을 파견할 수 있고, 화학무기 생산의혹이 있는 회원국 기업체에 대한 사찰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 협정에 가입하면 협정비준국들이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화학무기 및 생산공장을 폐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협약은 화학무기를 제한시키는데 가장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협정 가입에 주력할 것이다.

반면 북한은 1987년 3월 「세균성 그리고 독성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및 그러한 무기의 폐기에 관한 협정」(생물무기협정,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에 가입하였다. BWC는 1972년 4월 미국·영국·러시아의 주도로 체결된 국제 군축협정으로 생물·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금지와 파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생물학작용제 생산 설비 이전과 획득에 대해 지원·권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현장검증과 협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검증절차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협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 때문에 이 협정은 상징적이라 여겨질 수 있다.

미국은 2001년 7월 생물무기를 금지한 1972년의 초안에 힘을 실어주는 의정서 초안을 거부해 유럽 및 다른 나라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 내용은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해 세균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장들에 대해 사찰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미 군사시설 및 기업에 대한 외국인 사찰 허용에 대한 큰 부담 때문에 이를 거부하였다.

미국이 생물무기 생산 감축·저지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때 북한을 압박할 이유와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 실제로 생물무기를 통제하는 것은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노력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생물무기 확산 저지에 나서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이 BWC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장착한 미사일로 공격에 나설 경우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미군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과 같이 그리고 對테러전쟁기간중 누군가에 의해 탄저테러가 감행된 것과 같이 북한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상대로 생화학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은 있다. 미국은 예상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실현될 때 이를 북한이 미국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은 공격용 무기의 선택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동무기로 맞대응하겠지만, 북한이 다양한 운반수단을 통해 생화학무기로 공격을 감행할 경우 同 무기로 맞대응하기가 실제로 어렵다.¹¹⁶⁾

라. 재래식 군사력 감축

부시 행정부는 핵·미사일 문제외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제기해 새로운 의제로 쟁점화하고 있다. 미국의 문제 제기는 한·미간 원활한 역할분담을 제의한 한국정부의 구상과 배치된다. 한국정부는 남북한이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군축 협의’, ‘무력불사용’,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복원과 이 기반 위에서 군비감축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기본 구도를 가지고 있다. 즉, 한국정부의 ‘선 교류협력, 후 군사적 신뢰구축’ 구도와 달리 부시 행정부는 ‘선 군사적 신뢰구축’ 구도를 구상하고 있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감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116) Hun Kyung Lee, “The Clinton Administration’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34th International Seminar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Korea in Chirisan Plaza Hotel, 15~17 Oct. 1999, p. 47.

이렇게 미국이 ‘선 군사적 신뢰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독재자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위 개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배치”¹¹⁷⁾해 놓고 있는 상황이 동맹국 한국과 지역의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을 주요 목표로 간주했던 클린턴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재래식 병력감축론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무력증강을 합리화하기 위한 꾀변으로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를 불의에 타격하기 위한 뒤집어 놓은 북침론”¹¹⁸⁾이며 이는 곧 ‘대북무장해제 기도’¹¹⁹⁾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 자위적인 국방력을 더욱 철석같이 강화해 나갈 것”¹²⁰⁾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재래식 병력감축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완전히 철수한 후 연방제 통일의 진척과정에서 상응하게 북남사이에 다루어질 것”¹²¹⁾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메시지는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병력 감축을 계속해서 주장할 때 주한미군 철수를 군축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재래식 군사력 감축 문제를 제기할 때 미·북간 협상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평양지도부는 재래식 전력 감축을 체제 수호 차원에서 민감하게 여기고 있고 미사일보다 더 강하게 주권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 문제와 관련된 협상에서 쉽게 양

117) Colin L. Powell, Secretary of State Nominee, *Confirmation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enate*, 17 Jan. 2001.

118) 『평양방송』, 2001.3.12.

119) 『로동신문』, 2001.5.28.

120) 『조선중앙방송』, 2001.11.29.

121) 『로동신문』, 2001.4.16.

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미·북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강제할 수단과 방법은 한계가 있다. 재래식 전력 감축의 대상이 남북한의 전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협상하기 어려운 점도 미국에게 제약을 주고 있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감축에 동의한 뒤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할 때 미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 역시 문제로 남아 있다.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한반도전쟁에 대비해 ‘신속배치 전력’(Rapid Deployment Forces)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 전력은 기동성과 화력을 크게 향상시킨 전력이다. 분쟁지역에 신속히 배치함으로써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첨단무기의 개발로 미군의 기동성이 굉장히 민첩하게 이루어지고, 중국·북한 등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들이 바다를 끼고 있어 육군보다는 해·공군의 역할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해외기지를 비롯해 전방배치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투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주둔 미군기지를 대폭 줄이고 대신 스텔스 폭격기, 무인항공기, 잠수함 등 공군과 해군의 장거리무기 의존도를 높이려 한다.¹²²⁾ 게다가 미국은 디지털·정보·사이버 시스템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며, 첨단무기 중심으로 전력 기동성을 경량화하려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은 탈냉전 시대에 적용돼 왔던 중동과 아시아 등 두 지역에서 대규모 동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존의 윈·윈(Win-Win) 전략을 폐기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육군 위주의 재래식 전쟁에 적합한 것으로 해·공군의 역할이 중시되는 디지털·정보·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미국은 1개의 대규모 전

122) *New York Times*, 17 May 2001.

쟁에서의 결정적 승리(win decisively), 제한된 기간의 국지전 참가, 침략국 적대행위 예방, 미 본토 방어 등 4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¹²³⁾ 특히 한반도 또는 대만에서의 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더 많은 해군과 공군력을 아시아 대륙에 가깝게 이동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¹²⁴⁾

123) *New York Times*, 12 July 2001. 새 군사전략이 대폭적인 병력증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124) Remarks by Donald Rumsfeld, cited in *Washington Times*, 25 July 2001.

IV. 미·북간 협상실태

1. 핵 협상

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미·북간 협상

북한은 대내적인 식량난·경제난과 함께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연쇄붕괴로 국제환경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하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에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였고,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및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① 내적 위기를 핵무기 개발과 연결시켜 핵문제를 국제적 안보사안으로 유도하고, ② 위협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③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 외부세계로부터 지원을 최대한 얻어내려 하는 전략을 추진해 미국은 난관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제재를 포함해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CFC OPLAN 5027)¹²⁵⁾에 의한 핵

125) 「작전계획 5027」은 1992년에 수립되었다. 그것은 5단계의 대응태세를 포함하고 있다. 1단계는 미 신속전개역제전력 배치 등을 통해 전쟁억제력 강화에 주력한다. 2단계는 서울북방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북한의 전략목표를 파괴한다. 3단계는 북한의 주요전투력을 격멸하고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을 시도한다. 4단계는 평양을 고립하고 점령지를 군사통제한다. 5단계는 종전 이후 한국정부 주도 하에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1994.4.9 이는 북한 영변의 한 작은 원자로에서 핵폭탄 제조용 원료를 재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선제공격안으로 크루즈 미사일 발사와 F-117 스텔스 전투기 파견을 계획한 것이었다. CNN, 4 Oct. 2000.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하였고, 이에 북한이 전쟁불사의 자세로 나와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간 갈등과 대립은 극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대립 구도 속에서도 미국과 북한은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였다.¹²⁶⁾ 북한이 흑연감속로의 동결, 흑연감속로 및 부대시설의 건설중단과 최종적인 해체, NPT체제 복귀, IAEA의 핵안전협정 이행 및 임시·일반 사찰 등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대북 핵선제공격과 사용위협을 포기, 경제지원 및 1,000MWe급 2기의 경수로 공급 등을 약속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미·북 합의문에는 북한이 핵투명성을 단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과거의 핵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언급이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대북 제재나 군사적 행동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북한이 대량의 핵무기를 생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핵활동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이 NPT 조약 탈퇴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않는, 즉 미래의 핵동결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이다.¹²⁷⁾

클린턴 행정부는 ‘제한적 분석 모델’(Successive Limited Comparison Model)¹²⁸⁾에 기초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요

126) CRS의 Larry A. Nisch 박사는 1994년 미국정부의 정책은 원자로가 완성되기 전 북한이 내부갈등을 못이겨 붕괴하리라는 예측을 근거로 미·북간 기본 합의문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Washington Times*, 8 Nov. 1996.

127) 이현경,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1998), p. 15.

128) Charles E. Lindblom,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 (Spring 1959), p. 81. 제한적 분석모델은 정책결정자들이 제한된 분석에 의해 결정을 내리고 마련된 수단에 의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목표를 먼저 설정한 뒤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대안을 내놓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중요한 요소를 빠뜨려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목표달성에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제한된 선택을 놓고 숙고를 하였다. 미국의 대북제재 및 봉쇄, 중·러의 협조에 의한 해결,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군사공격, 핵원자로 공격, IAEA의 사찰 압력, 핵동결, 대북지원 등을 고려했지만 몇 개의 제한된 선택안을 가지고 적용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이는 북한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려웠고 북한이 호전성 및 투쟁성, 예측불허의 태도를 보이면서 ‘벼랑끝 전략’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핵투명성 확보라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미·북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일차적으로 1995년 1월 미국상품 반입, 선박입항 허용, 교역·투자제한 완화 및 통신·금융거래 제한 완화조치 등 1단계 대북 규제완화조치를 시행했으며,¹²⁹⁾ 대북 중유제공과 경수로 공급지원에 나서고 있다. 북한 역시 합의에 따라 핵활동 동결작업을 이행해 왔다.

129) U.S. Department of State, “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20 Jan. 1995. 1단계 조치는 4개항으로 ① 언론취재, 통신, 정보: 미·북간 진화 및 통신연결을 위한 거래 허용, 개인·단체 여행 및 대북여행서비스 허용, 미국인의 북한내 신용카드 사용 허용, 미 언론사의 북한사무실 개설 허용, CD, CD-ROM, 예술품 등으로의 정보자료개념 확대, ② 일정한 조건하에서 금융거래 허용: 미국에서 시작 또는 종결되지 않는 거래의 청산을 위한 북한의 미국은행 시스템 사용 허용, 북한정부의 소유가 아닌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 ③ 무역: 미국철강산업에서 내화물질로 사용되는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수입허용, ④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한 기타 조치: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과 활동을 위한 거래 허용, 미 기업의 대북 경수로 지원, 대체연료 제공, 폐연료처리 등 사업참여에 있어 관련법규에 따른 사안별 검토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관련법규 개정 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남북관계 진전 없이 미·북관계 진전만을 염려한 한국정부의 요청을 고려한 최소한의 제재완화 조치에 해당된다.

나. 금창리 지하시설 방문 협상

북한이 민수용시설로 주장하는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시설로 의혹이 되자 미 국무부는 1998년 8월 이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의혹시설에 대해 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네바합의를 파기할 것이라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미국은 지하시설 문제가 제네바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나 그 정신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하시설방문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자 미국과 북한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시켰다. 제1차 협상(1998.11.16~18, 북경)에서 미국은 제네바합의 이행을 요구했고, 북한은 1개 장소, 1회 방문을 제의 하면서,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될 경우 3억 달러를 보상할 것을 미국에 전제하였다. 제2차 협상(1998.12.4~11, 뉴욕, 워싱턴)에서 미국은 보상불가란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4자회담 및 미사일회담에 진전이 있을 경우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북한은 금창리시설이 핵과 무관한 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면 그 대가로 대북 제재완화를 비롯 대규모 식량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즉, 일괄타결방식을 제의한 것이었다. 제3차 협상(1999.1.16~17, 제네바)에서 북한은 식량 100만 톤 지원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제2차 협상에서 북측의 일괄타결 방식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미·북은 제4차 협상(1999.2.27~3.16, 뉴욕)에서 대북식량지원과 복수 현장조사 허용의 맞교환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협상이 일단락 되었다. 북한이 금창리 시설에 대해 1999년 5월에 1차 그리고 2000년 5월에 2차 현장조사 실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추가 현장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¹³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2000년 5

월까지 60~90만 톤의 식량과 씨감자 제공 및 농업개발지원 등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합의사항엔 식량지원 내용이 제외되어 있으나, 미·북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합의했다. 이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를 정치문제와 직접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미국의 방침을 북한이 받아들인 것이다.

협상을 통해 북한은 의혹시설 사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구체적인 수치로 식량지원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미측은 미 의회의 강경분위기를 의식해 북한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웠다. 그들은 미 의회가 1998년 12월 미 행정부의 대북접촉과 중유공급 비용의 지출을 승인 받기 위한 조건으로 7개 항을 제시하면서 그 중 지하 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¹³¹⁾을 포함시킨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강경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고 향후 일정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협상 타결에 나섰다. 결국 미국과 북한은 무제한적인 현장접근권 확보와 식량확보라는 맞교환식 절충선을 찾았으므로써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실리를 챙긴 타협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미·북간 합의에 따라 미 국무부 한국과 체네바합의 담당 부과장 위트(Joel Wit)와 핵문제 전문가들이 포함된 14명의 인원이 금창리 시설에 대해 1차 현장조사(1999.5.20~24)에 나섰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 국무부는 금창리 지하시설은 미완공(unfinished)이고, 대규모 텅빈 동굴단지(extensive, empty tunnel complex)로 구성된 핵과 무관한 시설로 핵개발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¹³²⁾ 그러면서 미 국무

130) 미 의회는 금창리 현장조사가 ‘사찰’(inspection)이 아닌 ‘방문’(visit)인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장조사 방법, 규모, 범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131) 『世界週報』, 1998.12.15.

부는 핵시설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거대한 지하시설이며 이러한 염려를 가질 만한 확신이 가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현장조사(2000.5)에서도 미 국무부는 핵개발로 전용된 흔적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¹³²⁾

2. 미사일 협상

1차 미사일회담(1996.4.20~21, 베를린)에서 미·북은 미사일 비확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수출 중단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핵운반 미사일이나 관련기술의 이전을 금지한 MTCR를 준수하도록 북한에 요청하였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타결되기 어려운 미사일제조 동결보다 대중동지역 적성국가에 대한 미사일 수출 저지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이 MTCR에 가입할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 및 추가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것을 타결책으로 내놓았으나 북한이 자위권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은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서 북·미간 제반 현안의 태두리 안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 계속될 미사일 회담을 4자회담, 평화협정 체결문제 등과 연계시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132) Statement by James P. Rubin, *Report on the U.S. Visit to the Site at Kumchang-ni,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6 June, 1999.

133) "Text: State Department Release on Visit to North Korean Facility," *Washington File*, 30 May 2000.

미사일문제는 미사일회담에서 다루자는 입장을 보여 논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 회담에서 미·북은 미사일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만 합의했을 뿐이다.

2차 미사일회담(1997.6.11~13, 뉴욕)에서 미국은 북한에 노동 미사일개발 계획과 한국내 주요 군사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사일 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미사일개발 중단과 MTCR에 가입하도록 재차 촉구하였다.¹³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적 차원의 문제로서 누구도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MTCR 가입문제 역시 자신의 판단소관이라고 맞섬으로써 양측은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¹³⁵⁾ 그러나 미·북 양측은 회담재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에 도출했었다.

3차 미사일회담(1998.10.1, 뉴욕)¹³⁶⁾에서 북한은 3년간 10억 달러씩을 보상하면 대중동국가에 대한 미사일무기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¹³⁷⁾ 그러나 미국은 현금보상이 어렵다는 입장

134) *Washington Post*, 28 Aug. 1997.

135) 『内外通信』, 1997.6.16 참조.

136) 미국이 8월 26일 장승길 駐이집트 대사의 망명을 허용하자 북한은 예정된 미사일회담(1998.8.27~29)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특히 장 대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으로 북한의 권력구조 내부를 잘 알고 있고 미사일 무기거래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어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미사일회담이 거북할 수밖에 없었다. 미 국무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인 장 대사 일행과 장승호 파리주재 북한무역대표부 경제참사관 및 그의 가족들의 망명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 직접 보고했고 재가를 받았다. 미 국무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진전된 미·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수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었다.

137) *Washington Post*, 14 March 1999;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 April 1999. CIA 자료를 인용, 파키스탄 신문은 북한이 지난 1980년대부터 파키스탄·이란·이라크 등의 중동국가에 연간 10억 달러 어치의 각종 미사일을 수출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Radio Free Asia*, 28 May 1999.

을 고수하는 한편 대안으로 경제제재 완화조치¹³⁸⁾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제네바합의 사항인 데도 미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¹³⁹⁾ 이유를 들어 미국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이 회담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4차 미사일회담(1999.3.29~31, 평양)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확산 저지를 북한에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예전과 같이 북한은 미국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지만 양측은 5차 회담을 빠른 시일내 개최해 미사일문제를 계속 의논하자는 데 합의했다.

미·북간 1차(1999.6.23~24, 베이징), 2차(1999.8.3~9), 3차(1999.9.7~12, 베를린)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를 의제로 삼고 협상에 임했다. 이 문제를 두고 1차, 2차 두 차례의 회담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3차 회담에서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중지하는 대가로 미국이 경제제재 완화조치와 전반적인 관계개선에 합의한 것이다. 그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중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할

138) 당시 미국은 북한이 만일 도발적인 미사일수출 등과 같은 일련의 행동을 중지한다면 그 대가로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를 고려했었다. *Washington Post*, 28 Aug. 1997.

139) 「미·북 기본 합의문」(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1 Oct. 1994) 제3조 1항, “이 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측은 통신 서비스 및 금융거래 제한을 포함하는 교역 및 투자 장벽을 완화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미·북간 합의는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매 단계에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북한의 상응조치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것”¹⁴⁰⁾이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와 함께 클린턴 대통령은 베를린 고위급 회담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및 상원외교위원회에 1999년 9월 15일~16일 보고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검토 결과 및 건의』(이하 페리보고서)¹⁴¹⁾에 바탕을 둔 정책방향과¹⁴²⁾ 단계적 접근방향

140) 『조선중앙방송』, 1999.9.24.

141) William J. Perry,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Committee* (hereafter cited as Perry's Testimony), Senate, 12 Oct. 1999; William J.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classified Report North Korea Policy Review*, 12 Oct. 1999.

Perry 대북정책조정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실시하라는 과제를 1998년 11월 부여받고 미 행정부의 내외 전문가, 한국·일본 등 동맹국 및 동북아 이해당사국 관계자들, 인도적 원조기관 관계자들과 협의한 끝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보고서를 마련하였다. 페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약요소의 틀 안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이 종국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모습 그대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둘째,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를 신중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추구해 나가야 한다. 셋째,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제네바합의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나, 영변 핵시설에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한 동결과 감증을 가능케 한 이 합의를 폐지 또는 대체하지 않고 보완해야 한다. 한반도안보환경 조성 차원에서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침략위협 감소조치 및 억지력 확보를 위해 주한미군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 일부라도 철수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자제를 촉구하고 생화학무기를 다자적인 문제로 간주하면서 확산저지를 촉구하고 있다.

142) 페리보고서는 미 행정부에 대해 다섯 가지 정책을 건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A Two-Path Strategy)

에¹⁴³⁾ 따라 북한과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제네바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9월, 2단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했다.

방식 채택, ② 대북정책 수행을 위한 체제 강화, 이를 위해 행정부 각 부처간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고위직 임명, ③ 대북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미·일 3자 고위조정그룹(TCOG) 존속, ④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⑤ 북한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 대비.

특히 첫번째 사항인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은 미국, 한국, 일본이 동일한 목표 추구를 위해 상호 조율 및 상호 보완된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전략으로 안보이익을 수호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는 이중 전략으로 북한의 핵무기 계획과 미사일의 시험·생산·수출·배치 중단을 위한 협상에 있어 포괄적이며 통합된 접근 방식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무역제재 완화, 여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국과 일본정부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상호 조율된 개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느끼고 있는 위협을 감소시켜, 북한이 한·미·일과의 평화공존 및 경제·사회발전 추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냉전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다. 두번째 접근방식은 미국이 협상으로 타결되기 어려운 부분의 위협을 봉쇄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북한이 첫번째 접근방식을 거부할 경우 단호하고 절제된 조치를 취하되 가급적 직접적 충돌을 피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유지하고 역내 안보 상황을 위협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기타 권고사항으로 페리보고서는 한국과 관련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 재회를 강조하고 있다. 통일문제는 궁극적으로 한국민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 관련, 피랍 일본인 문제해결을 역설하고 있다.

- 143) 페리보고서는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단기적 접근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미국은 일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중·장기적 접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계획 중단에 목표를 두고 북한의 협력 확보를 위해 미·북 관계정상화를 고려하고 있다. 3단계는 장기적 접근이다. 한·미·일과 북한의 협조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는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것을 반드시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현존하는 위협의 감소조치를 동시에 취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대적성국 교역법, 방산물자법 및 수출관리법 등에 근거한 대북 제재조치들 중 일부를 완화하는 것으로 수출, 금융, 투자, 항공기 및 선박 등 4개 분야에 부과해 온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한 것이다.¹⁴⁴⁾

5차 미사일회담(2000.7.12, 칼라룸푸르)에서 북한은 대중동 국가에 대한 미사일무기 수출 중단 대가로 3년간 10억 달러씩을 미국에 요구한 바 있다.¹⁴⁵⁾ 미국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지 않

144)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act Sheet: 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17 Sept. 1999. 이는 투자·교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① 대부분의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② 미국회사와 외국내 자회사를 통해 수출 및 재수출되는 대부분의 소비재 상품, 금융서비스,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민감하지 않은 물자투입, ③ 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교통, 도로, 항만, 공항 등 하부구조와 여행,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 ④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 ⑤ 상업적인 미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승인된 화물의 북한 수송, ⑥ 미·북간 상업 항공기 운항 등이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따라 북한과 특정 상업 및 무역거래에 관한 제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미 기업의 교역과 투자진출은 가능해져 북한에 대한 대부분의 소비재 수출과 북한상품의 미국내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방위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한 미 기업의 대북 투자가 자유로워졌다. 게다가 미국적 선박·항공기의 북한 영공·영해의 진입이 가능해져 물적 교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남아 있는 규제사항은 테러지원국 지정과 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 미사일 수출 등 비확산 관련 법규 및 민감물자 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간 협정에 따른 제재, 무기 등 국방분야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 대적성국교역법 및 의회의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무기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의 대북 판매 금지, ② 미 상무성에서 규제하는 군사용 물품의 대북 판매 금지, ③ 민간과 군사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과 기술의 허가받지 않은 수출 금지, ④ 대외원조법, 평화봉사단법, 수출입은행법, 농업 무역 및 개발법상 대북원조 금지, ⑤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지원 반대, ⑥ 미국 민간인과 북한정부 간의 허가받지 않은 금융거래 금지, ⑦ 동결된 미국내 북한자산에 대한 청구 금지 등이다.

145) Arms Control Association, "Chronology of U.S.-North Korea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August 2001); Alex Wagner "U.S.-North Korea Missile, Terrorism, Talks Resume: North Korea Admits to

는 한 현금보상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 정상화’(economic normalization)를 제안한 바 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안에 대해 거부하자 이 회담 역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북한의 특사로 방미(2000.10.10~12)에 나선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과 국제사회의 북한 로켓 제3국 발사지원안을 제의하였다. 미측이 조 특사의 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북한 미사일개발 저지를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미·북 공동성명」(U.S.-D.P.R.K. Joint Communiqué, 2000.10.12)을 통해 나타난 바 있다.¹⁴⁶⁾

미·북간 공동성명이후 곧바로 추진된 올브라이트(Madeleine K. Albright) 前 미 국무장관의 방북(2000.10.23~25)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은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와 미국의 보상을 맞바꾸는 안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험발사 포기,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중단, 중거리 미사일 배치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인공위성 대리 발사, 테러지원금 해제, 대북 식량 및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대신 발사해 주는 문제는 발사의 횟수, 그 횟수

Exporting Rocket Technology” (September 2000).

146) 「미·북 공동성명」은 적대관계 청산, 미·북간 전면적 관계개선 조치 추진, 경제협력 확대,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 등 미국의 관심사 해결, 핵 기본 합의의 이행 추진, 식량 등 인도적 협력, 미군 유해 송환, 정전협정의 평화보장체계로의 전환, 테러종식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관계 구축, 미국 대통령의 북한방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U.S.-D.P.R.K. Joint Communiqué*, 12 Oct. 2000; Charles Pritchard, *Hearing Testimony before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enate, 6 Nov. 2001.

의 필요성과 정당성, 발사비용 부담 문제, 발사형태 문제, 그리고 북한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제3국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할 때, 북한기술자들에 대한 기술이전의 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어서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¹⁴⁷⁾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측에 제공하는 위성발사 기술이 미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북한의 제의를 거절한 것이다.

6차 미사일회담(2000.11.1~3, 팔라룸푸르)에서 미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과 단·중거리 미사일 및 노동 1호 미사일수출 중단을 북한에 요청하였다. 미사일수출 중단 요청에 대해 북한이 현금보상을 요구하자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문제는 부시 행정부에게 넘어 갔다. 부시 행정부는 검증과 투명성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북한과 접촉에 나서고 있다. 반면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때 진전된 안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이후 미·북간 미사일 회담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147) Remarks by Stanley O. Roth, 아태평화재단 초청 간담회, 롯데호텔, 2001.2.23. 이종석 외,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 4강의 대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성남: 세종연구소, 2001), pp. 54~55 참조.

V. 미·북간 시물레이션

1. 미국과 북한의 수단

가. 미국의 수단

미국은 외교, 경제제재, 전쟁 등 세 가지를 외국과의 교섭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¹⁴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해 미국은 주 수단외 여러 수단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 중 당근을 내세운 수단은 식량·의약품 지원, 경제제재 완화, 원조, 중유제공, 경수로공급 지원,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경수로 송배전망 건설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삭제, 미·북관계 개선 및 국교정상화 등이다. 반면 채찍을 내세운 수단은 정부적 차원의 식량·의약품 지원 중단, 경제제재 원상복귀 또는 부과, 중유제공 중단, 경수로공급 지원 중단, 봉쇄, 군사제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적·비정부적 차원의 식량지원

미국은 여전히 정치군사적 문제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결부시키지 않고 있다. “餓死 자체가 정치적 불안, 정치적 실패, 또는 경제적 실패에서 비롯되고,” “세계 모든 국가의 경우, 식량원조를 정치적인 문제에 연계시키기 시작하면 餓死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식량원조는 불가능하게 될 것”¹⁴⁹⁾임을 주지하면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식량지원은

148) Jesse Helms, “What Sanctions Epidemic? U.S. Business’ Curious Crusade”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1999), p. 5.

149) *U.S. Department of State Daily Press Briefing*, 28 April 1997.

정치군사적 사안과 연관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980년대 중반 에티오피아의 공산정권에 봉쇄정책을 취한 결과 이 나라에서 집단 餓死로 홍역을 치른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인도주의적 명분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경험을 참고삼아 미국은 지난 1991~1992년 에티오피아 기근 당시 위정자들의 전제정치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기아문제를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동참하였고, 1990년 이라크, 2001년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량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은 북한의 불안정성과 붕괴 가능성에 따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방위 차원에서 추진되는 즉,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인도주의적 목적의 지원이라 볼 수 있다.¹⁵⁰⁾

미국은 식량문제를 외교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전통에 따라 급속한 산업화, 영농기술 및 종자개량의 낙후, 대홍수 등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의 생존을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일환에서 정부적 차원의 식량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호전성과 투쟁성을 완화시키고 변화와 국제사회로의 참여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정치군사적 대립·갈등을 야기시킬 시 미국은 정부적 차원의 식량·의약품 지원을 감소하거나 중단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정부적·비정부적 차원의 식량·의약품 지원을 구분하면서 대북지원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할 때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지 않을 때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150) 그런데도 미 공화위원과 국방부는 미국이 북한에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에 나서면 결국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조

미국은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적용해 인권침해국가, 공산국가,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지원 및 원조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 법에 적용받는 해당국가이다. 또한 미국은 대외원조법의 농산물 교역 및 개발법, 평화봉사단법, 수출입은행법에 근거해 대북원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에서 현물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대북원조는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경제제재 완화·부과

미국은 지난 200년간 경제제재를 외교정책의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주지하듯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때부터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경제제재를 수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헬름스(Jesse Helms) 전 미 상원외교위원장은 경제제재가 없었다면 구소련의 해체, 냉전 당시 폴란드에서의 자유노조 인정 등 동유럽의 자유민주화 바람 등이 가능했겠는가¹⁵¹⁾ 하고 경제제재에 대한 효과성을 예증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은 테러방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등을 위한 수단으로 경제제재를 활용할 수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삭제

미 국무부는 1987년 11월 KAL항공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 1988년

151) Helms, “What Sanctions Epidemic?,” p. 5.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¹⁵²⁾ 미국은 북한이 정치군사적 위기국면을 전쟁이나 테러 또는 다른 무력적 방법에 의해 해결하려는 의도가 여전히 남아 있고 테러 지원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에 대한 의심 및 테러행위 중단에 대한 확실한 입증조치가 없다는¹⁵³⁾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부터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¹⁵⁴⁾

중유 및 경수로 공급 지원·중단

제네바합의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이 핵활동 동결을 전제로 1,000MWe급 2기의 경수로 공급과 1기의 경수로가 공급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북한이 핵동결 합의를 위반할 시 미국은 경수로 공급 및 중유지원을 중단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52) 현재 북한·쿠바·이란·이라크·리비아·수단·시리아 등 7개 국가가 미 국무부에 의해 테러국가로 지정된 상태다. 미국은 냉전종식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감소했다고 보지만 북한·이라크·리비아 등 이른바 테러지원국가들이 테러위협 및 행위를 가하고 있다고 본다.

153)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지명이후 계속해서 테러반대 입장을 강조해 왔다.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2000년 10월 미·북 공동코뮈니케에서 “모든 국가와 개인에 대한 테러행위를 반대한다”는 성명과 함께 테러에 대한 모든 국제협약에 가입할 뜻을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선 U.S. Department of State, *U.S.-D.P.R.K. Joint Communique* 참조. 미국이 지난 5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을 때에도 북한은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154)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해당 국가가 테러행위지원을 중지했으며 앞으로도 행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거나 해제조치 45일 이전까지 최근 6개월간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음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

전력지원

북한은 전력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전력을 제공할 경우 군사력에 활용할 수 있고 제네바합의 준수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IAEA가 요구하는 핵안전조치 및 특별사찰 그리고 기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력제공을 모색할 수 있다.

경수로 송배전망 건설 지원

북한의 빈약한 송배전망이 원시적이라 경수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 때문에 제네바합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시 행정부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송배전망 건설지원 내용이 제네바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송배전망 건설에 대한 의무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사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송배전망 건설 지원을 모색할 수 있다.

미·북관계 개선 및 국교정상화

북한은 신국제질서 아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두 개의 한국정책’ 및 ‘남북 등거리외교’를 모색하듯 미국 역시 북한을 같은 식으로 대대 주도록 바라며,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책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미 남한은 러시아·중국과 관계정상화 및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진척시키는 등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맺지 못한 채 한·미 공조체제의 틀 안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모색하려 한다.

북한은 미국과 외교관계의 발판을 마련하고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전개시킬 수 있다면 북한이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고 주도권을 빼앗긴 남한과의 외교대결에서도 북한에 불리한 외부환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미국은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봉쇄 또는 군사적 제재

군사적 제재에 앞서 해상봉쇄를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은 봉쇄를 통해 필수전략물자와 원유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¹⁵⁵⁾ 비록 중국이 제재를 반대하거나 또는 미온적으로 나온다 해도 나머지 국가들이 협력하여 상기품목에 대한 금수를 실시하면, 북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제재를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동결을 파기할 시 한반도에서 미 국익의 수호를 위해 군사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¹⁵⁶⁾ 그 군사적 대응은 한 때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98」¹⁵⁷⁾을 통해 표출된 바 있다. 한반도

155) 반면 봉쇄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대두된다. 북한이 오랫동안 폐쇄적 자립경제체제를 유지해 왔고 대외의존도가 GNP의 11.8% 정도에 불과해 제재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비록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가 힘들고 필수전략물자가 두만강과 압록강을 통해 밀거래되기 때문에 봉쇄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봉쇄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 1941년 대일 석유금수 해상봉쇄가 진주만 기습을 초래한 역사적 경험은 이를 상기시킨다.

156) 「조선일보」·「한국일보」, 1996.10.17; 「서울신문」, 1996.10.28.

157) 금창리 핵의혹시설이 대두되자 미국은 「작전계획 5027-98」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북한은 “미제가 개정한 작전계획 5027-98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체도를 무력으로 말살하려는 극히 호전적이고 위협천만한 전쟁각본, 전쟁문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 보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며, 더 큰 재앙에 직면하기 전에 승부수를 걸어 공포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매파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나. 북한의 수단

제네바합의 준수·핵동결 파기

핵동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봉인된 사용후 핵연료가 제3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핵투명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은 경수로 협상이 지연될 때마다 핵동결 파기 위협을 일삼았다. 북한 당국은 경수로 제공과 관련한 시한문제를 차요시(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한 채 언제 중단될지 모를 중유나 제공받으면서 핵동결을 무한정 동결시킬 수 없다¹⁵⁸)는 표명과 함께 미국이 2003년까지 넘겨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방송」, 1999.5.29)라 간주하고, 미국 주도의 NATO군이 “유고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끝낼 경우 북한을 다음 번 공격 목표로 삼을 가능성”(South China Morning Post, 28 May 1999)이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북한은 이 계획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이 3가지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첫째: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이북에 대한 제재를 가하다가 그 연장선우에서 타격을 가하는 방법, 둘째: 이북의 <핵의혹시설>들에 대한 <외과수술식>타격을 가하는 방법, 셋째: 정세를 지속적으로 긴장시키다가 정세악화를 구실로 이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단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북한은 1998년 12월 초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폭탄선언을 한 바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식의 작전계획이 있다. <외과수술식>타격이요, <선제타격>이요 하는것들은 결코 미국만의 선택권이 아니며 그 타격방식도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타격을 피할 자리가 이 행성우에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p. 271~272.

기로 한 200만kw 경수로의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분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흑연감속로(원자로)를 되살리는 정황이 조성되지 않을 수 없다¹⁵⁹⁾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입장표명은 경수로 건설이 난관에 처할 때 핵동결 파기를 한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개발 추진·중단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다. 시험발사한 바 있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공격권에 두고 있으며, 개발중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미국의 하와이,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자위권 차원에서 추진해 오고 있지만 미국과 맞교환식 방법의 한 수단으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를 모색할 수 있다.

협박

북한은 ‘협박’(blackmail)을 미국을 위협하는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
- 158) 『조선중앙통신』, 1996.11.15. 유엔 북대표부 고위관계자 역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 바 있다. 특히 강석주 외교부 제1 부부장은 “우리는 부득이 현재 진행중인 폐연료봉 봉인작업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핵무기 완성을 위한 핵개발 계획에 다시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서한을 로드(Winston Lord)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에게 보내면서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중앙일보』, 1996.11.16. 이어 북한은 핵합의를 파기할 것이란 위협을 가했다. 『조선중앙통신』, 1996.11.29.
- 159) 『조선중앙통신』, 2001.5.16. 경수로 공급 지연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북한이 거론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흑연감속로 재가동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경향이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에 식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구걸과 협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양면전략을 추구한 적이 있다.

협박의 예를 들자면, 추가지원이 없을 시 ‘북한에서 폭동·혁명이 발생할 가능성’(1995.5)¹⁶⁰⁾ 및 ‘핵동결 약속 파기’(1995.9)¹⁶¹⁾ 등을 예시 하였고, 김정우(1996.6) 전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을 통해 “일본을 사정권에 둔 핵미사일 4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식량지원을 해달라”¹⁶²⁾는 식이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북한의 표명을 통해서도 잘 묘사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적대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과 존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추호도 용납하지”¹⁶³⁾ 않을 것이며 “역사의 준엄한 철추를 내릴 것”¹⁶⁴⁾이다.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평화의 파괴자”¹⁶⁵⁾이며 “미국이 우리에게 칼을 내밀면 칼로 맞설 것이고 선의로 나오면 우리도 선의로 대담할 것”¹⁶⁶⁾이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결코 빈말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¹⁶⁷⁾ 게다가 “우리와 미국은 교전관계에 있으며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¹⁶⁸⁾ 이러한 메시지들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함께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대응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60) 이종혁의 발언, 『朝日新聞』, 1996.5.8.

161) *New York Times*, 1 Oct. 1995.

162) 『産經新聞』, 1996.6.9.

163) 『평양방송』, 2001.3.14.

164) 『로동신문』, 2001.3.17.

165) 『평양방송』, 2001.3.14.

166) 북한 외무성 대변인, 2001.1.25.

167) 『로동신문』, 1999.10.25.

168) 『로동신문』, 1999.10.25.

홍정

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홍정’(bargaining)이다. 북한은 금창리 지하시설을 통해 핵 재개발 의혹을 증폭시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시설에 대한 사찰을 둘러싸고 미·북간 협상이 진행되었고, 미측으로부터 식량제공을 약속받았다. 또한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 시험발사를 빌미 삼아 미국과 홍정에 나서게 되었고 결국 미사일 발사유예에 대한 대가로 특정 분야에 부과해 온 대북 제재 조치 해제란 막대한 실리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적 수단을 대상으로 미국과 홍정하려 하며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

무력행위

식량난·에너지난·경제난 등으로 붕괴의 길에 접어드는 절망적 상태에 이를 때 북한이 자멸보다는 전쟁을 통한 해결을 택하는 것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으로부터 승전에 대한 기대가 희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만을 기습했다. 일본이 석유금수를 방치해 패전을 감수하기보다는 돌파구를 뚫어나가려 선제공격을 택한 역사적 전례는 북한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북한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절망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고, 만일 시간이 다해 가는 것이라 판단했을 때 최상의 선택은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 공격을 하는 것이다.¹⁶⁹⁾

169) Harry Summers, “Threat of Another Korean War?” *Washington Times*, 23 Oct. 1997.

2. 사실 분석에 근거한 미·북간 시뮬레이션

가. 핵 문제

N-1: 제네바합의 준수 → 대북 중유제공 및 경수로 공급 계속

Fact-1)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5MWe 원자로의 재장전 포기를 비롯, 미완성 50MWe, 200MWe 원자로 시설 및 관련 시설의 건설 작업 속행 및 개시를 금지하고, 미국이 1,000MWe급 두 기의 경수로를 공급하고 한 기의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Fact-2) 북한이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제네바합의 합의 약속들을 이행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다.

PA-US-1) 제네바합의에 따라 미국은 1기의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할 것이다.

* Fact: 사실

* PA-US: 미국의 가능한 행동

N-2: IAEA의 조기 특별사찰 수용 → 관련 법안 해제, 경수로 핵심 부품 제공

Fact-1) 제네바합의에 의하면 1기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봉인된 사용후 핵연료를 제3국으로 이전할 것과 IAEA로부터 특별사찰에 해당되는 철저한 사찰을 받

도록 되어 있다.

- Fact-2) 지금까지 북한은 합의의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인 사찰활동만을 허용해 왔을 뿐이다.
- Fact-3) 북한은 2001년 11월 IAEA와의 17차 실무협상에서 과거 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변의 동위원소 생산실험실에 대한 IAEA의 방문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핵연료 봉 방사능 측정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 Fact-4) 북한은 영변 5MWe 실험용 원자로 핵연료봉 봉인작업을 완료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제3국 이전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 Fact-5) 미국은 북한이 IAEA의 안전조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수출입 금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재를 취하고 있다.
- Fact-6) 미국은 재처리 폐기물 저장소로 의심받는 시설에 대해서 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 PA-US-1) 미국은 북한이 IAEA의 사찰을 통해 과거 핵활동을 규명하면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핵확산금지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등에 의거한 북한과의 무역 및 통상관계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경수로 핵심부품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N-3: IAEA 특별사찰 지연 → 경수로 공급 지연

- Fact-1) 미·북간 합의에 의하면 1기 경수로는 2003년, 2기 경수로는 2004년 완공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지연으로 경수로 건설은 5년 이상의 지연이 예상된다.

- Fact-2) 2003년을 기한으로 한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력손실 보상 요구를 외면한 채 사찰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강도적 요구’라¹⁷⁰⁾ 간주하면서 사찰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 Fact-3) 부시 행정부는 경수로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제공되기 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사찰이 희석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수로에서의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IAEA의 사찰을 먼저 받는 방향으로 합의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 Fact-4) KEDO의 운영은 한·미·일·유럽의 합의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국 중 한 당사자가 반대하면 경수로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
- Fact-5) 북한은 미국이 제네바합의 이행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 특별사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Fact-6) 북한은 IAEA가 핵에 대한 검증과 현지사찰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려는 미국의 각본과 조종에 따른 것이라 보고 있다.¹⁷¹⁾
- PA-US-1)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경수로 공급을 지연하거나 경수로 핵심부품 제공 이전에 경수로 공급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170) 북한 외무성 대변인, 2001.11.28.

171) 『조선중앙TV』, 2001.10.11.

PA-US-2)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N-4: 대북중유 제공 예산 미승인 → 대북 중유제공 및 경수로 공급 중단

Fact-1) 클린턴 행정부시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와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대북식량지원, 중유제공, 경수로 건설지원에 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수출 및 시험발사, 핵개발 위협, 핵의혹 지하시설 건설 등을 추진해 온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Fact-2) 대북 강경 공화인사들은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위해 경수로 공급지원과 1기 경수호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합의는 북한의 협박을 보상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

Fact-3) 미 의회는 1998년 12월 미 행정부의 대북접촉과 중유공급 비용의 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 ①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 ② 남북대화의 재개, ③ 미·북 기본 합의의 완전 실시, ④ 폐연료봉 밀봉작업에 대한 협력, ⑤ 지하의혹시설에 대한 사찰, ⑥ 탄도미사일의 개발 및 수출 정지, ⑦ 대북 원조물의 전용 방지 등 7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¹⁷²⁾

Fact-4) 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999년 3월 5일 ① 북한 핵관련 시설 정기 특별사찰, ② 대포동 미사일 개발·수출 저지, ③ 한국어 가능한 대북지원실태 감시요원 북한 파견,

172) 『世界週報』, 1998.12.15.

④ 북한의 불법적 마약거래 금지, ⑤ 한반도 비핵화선언 준수, ⑥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동북아시아 방어 기구 지원 증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¹⁷³⁾

Fact-5)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1999년 3월 1일 1차분 1,500만 달러의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행, ② 폐연료봉 안전 저장 협력, ③ 남북대화 진전 등을 제시했다. 이 사항에 대한 북한의 협조가 있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확약에 의해 1차분 예산집행이 가능하였다.

Fact-6)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자 미 의회는 1999년 6월 1일 대북 중유 제공을 위한 2차분 2,000만 달러의 예산지원을 승인하였다.

Fact-7) 한·미 양국이 1998년 잠수함 사건을 문제삼아 「부지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의 가서명 거부 및 7차 부지조사단의 파견연기 등 제한적 조치를 취하자 북한은 대미 경고성 차원에서 핵동결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에 미국이 핵동결 합의 위반시 중유지원 중단 및 군사공격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대응자세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동결 파기 위협은 철회되었다.

Fact-8) 미 국방부의 목표 중 하나는 핵무기 및 이를 탑재할 미사일을 저장하는 북한의 지하시설(터널, silo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소형무기를 2004년까지 개발하는 것이다.¹⁷⁴⁾

173) News from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Opening Statement of Chairman Benjamin A. Gilman, Hearing: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the Pending Perry Review*, 24 March 1999.

174) Revkin, "U.S. Is Developing Powerful Weapons to Pierce the

- PA-US-1)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사실화될 때 또는 핵동결 파기를 시도할 때 미 의회는 제네바합의 위반으로 간주, 중유지원 및 경수로공급 지원을 위한 예산승인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 PA-NK-1) 중유지원 및 경수로 공급 지원이 중단될 때 북한은 제네바합의 위반으로 간주, 합의 사항인 흑연감속로 동결, 흑연감속로 및 부대시설의 건설중단과 최종적인 해체, IAEA의 핵안전협정 이행 및 임시·일반 사찰 등의 거부와 함께 NPT 체제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 PA-US-2) 북한이 핵동결을 파기할 시 미국은 미·북 합의는 유지하되 대북접촉은 철저히 줄이고 북한을 무시하면서 북한정권과 경제가 붕괴할 때까지 고립·봉쇄하는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 PA-US-3) ‘선의의 무시’ 조치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로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부분적으로 폭격하거나 이전에 세운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98』 등에 따라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 PA-NK-2) 북한이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경우 전쟁¹⁷⁵⁾이란

Deepest Sites.” 이들 무기는 아프가니스탄戰에서 사용된 동굴 파괴탄인 ‘GBU-28’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75) 북한의 남침전략은 먼저 10만 명의 특공대를 침투시켜 공군기지와 기타 우선적 목표를 파괴한 후,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1만 문의 포등을 이용하여 포격을 실시하는 동시에 화학무기를 탑재한 수백 기의 Scud 미사일을 발사하고, 최종 단계로 전격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James Hackett, “Is the North Korea Threat Genuine?” *Washington Times*, 11 June 1997. 추가적으로 Roth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동아시아 담당보좌관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 많은 영토를 점령한 뒤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원조를 얻어내 전쟁을 종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Stanley O. Roth,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최후수단을 통해 공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 PA-NK: 북한의 가능한 행동

N-6: 제네바합의 수정 → 핵동결 파기

Fact-1) 대북 강경과들 중 일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on East Asia and Pacific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19 March 1996.

익명의 한 미 관리는 북한의 기습 남침은 강력한 주한미군의 반격에 의해 패퇴될 것이기 때문에 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Washington Post*, 20 May 1997. 반면 중국은 북한이 훈련문제와 연료부족, 내부통제력 상실 우려 등의 이유로 한국과 주한미군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Washington Times*, 29 Feb. 1996), 중국이 병력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만큼 북한의 승산은 없고 따라서 북한이 '자살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New York Times*, 14 April 1996)이라 보는 전망이 있다. 미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 開戰을 하게 되면 파멸될 것이라 지적하면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New York Times*, 7 April 1996. CIA는 북한 붕괴시 식량, 훈련, 병기의 부족과 사기저하 등의 이유로 북한군이 한국에 대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Jane's Defense Weekly*, January 1998, p. 14.

한편 미국은 남한과 함께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비한 합동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북한에 의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고조되면 경계태세에 들어가 북한군을 격파, 북으로 진격한다는 5단계 압승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① 미군의 긴급 전개전력을 한반도에 배치, ② 개전후 서울 이북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후방의 전략시설 파괴, ③ 북한의 주력을 소멸시켜 휴전선을 돌파하고 북진 및 대규모 상륙 작전 감행, ④ 평양을 포위, 고립시키고 점령지역에서 군사통제 실시, ⑤ 한국 주도하에 통일 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每日新聞』, 1997.5.22.

있다. 그들은 합의가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이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Fact-2) 대북 온건파들은 합의 파기는 미·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일본의 대북정책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Fact-3) 클린턴 행정부는 경수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빈약한 전력 시스템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임을 인지, 제네바합의 개정을 제의한 바 있으나 북한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 Fact-4)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송배전망이 원시적이라 원자력발전소를 다룰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안전한 전력 제공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 Fact-5)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경수로 전용가능성과 감독방법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제네바합의 개정과 경수로 대신 화전을 짓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Fact-6)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준수를 조건으로 미·북 합의를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 Fact-7) 부시 행정부는 미·북간 합의의 골격을 지켜나가면서 합의를 전제로 수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 Fact-8) 헬름스(Jesse Helms)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2001년 3월 17일 제네바합의 파기를 촉구한 데 대해, 북한은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대결을 선포한 것”이라면서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¹⁷⁶⁾이라 경고한 바 있다.

176) 『조선중앙방송』, 2001.3.17.

- Fact-9) 북한은 2001년 2월 21일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때와 달리 대북 강경 자세를 유지할 경우 제네바합의 내용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¹⁷⁷⁾
- PA-NK-1) 미국이 일방적으로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때 북한은 이를 제네바합의 위반으로 간주, <N-4, PA-NK-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합의 사항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 PA-US-1) 북한이 핵동결을 파기할 시 미국은 <N-4, PA-US-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의의 무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PA-US-2) 더 강도 높은 조치로 미국은 <N4, PA-US-3>와 같이 선제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 PA-NK-2) 미국이 경수로 공급 중단과 함께 대북중유 제공마저 중단할 때 북한은 <N-4, PA-NK-2>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전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나. 미사일 문제

M-1: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 관련 법규 해제

- Fact-1) MTCR은 사정거리 300km, 탑재중량 500kg을 초과한 미사일 완제품이나 무인항공시스템과 그 생산설비의 수출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 Fact-2) 미국은 북한을 MTCR 위반국으로 취급하면서 군사적·기술무기에 대한 대북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177) 북한 외교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2001.2.21; 『조선중앙방송』, 2001.3.17.

PA-US-1) 북한이 MTCR에 가입하면 미국은 미사일수출 등 비확산 관련 법규 및 민감물자 통제에 관한 다자협정에 따른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실현될 때 미국은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또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의 통제를 받는 상품의 개별적인 신규 수출 승인 금지를 완화할 것이며, 북한의 특정 실체가 생산한 제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 및 미정부간 계약체결 금지를 완화할 것이다.

M-2: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 중단 → 현물보상,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

Fact-1)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페르손(Goran Persson) 스웨덴 총리에게 미사일 기술·수출은 외화획득을 위해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Fact-2) 1979년 제정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은 미사일 수출 관련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⁸⁾ 또한 테러지정국가들에 대해 「수출관리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제 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들을 적용, 군수와 관련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해당 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다.

Fact-3) 북한은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에 탄도탄미사일관련 장비, 재료, 기술적 지식 수출을 계속해 왔다.

178) 「무기수출통제법」에는 국가안보상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재조치의 시행유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 Fact-4) 이란의 Shahab-3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의 기술에 의해 그리고 Shahab-4 미사일과 파키스탄의 Ghaznavi 미사일은 대포동 1호 미사일 기술지원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파키스탄의 Ghauri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대포동 1호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 Fact-5) 최근 북한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미사일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¹⁷⁹⁾
- Fact-6) 북한의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이 드러남에 따라 미 국무부는 1994년 개정된 「무기수출통제법」에 의거, 용악산 총무역회사와 조선부강 무역회사¹⁸⁰⁾에 MTCR에 규정된 장비·기술 수출 허가를 2년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 Fact-7) 클린턴 행정부는 MTCR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해 2000년 9월부터 2년간 미 기업들이 미사일 기술 및 설비, 부품 등의 판매를 북한과 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련의 제재조치를 취하였다.¹⁸¹⁾
- Fact-8) 미국은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수출해 왔다는 점에 경악하고 있으며 이들 적성국가들이 수입한 미사일로 상대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179) AP, 8 Nov. 2001.

180) 이들 회사는 노동당 제2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미사일 등 군수물자 거래를 담당한다. 이외는 별도로 북한군은 우각산·매봉·비로봉 등 20개 이상의 무역회사와 무기수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무기를 수출하여 1974년부터 1996년까지 전체 수출액의 20%가 넘는 연간 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Defense News*, 1~7 Sept. 1997, p. 3.

181)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장비·기술 및 전자·우주·군용기 분야의 생산과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활동과 관련된 계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Fact-9) 미국의 대북 미사일 수출에 대한 조치는 포괄적 경제제재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실질적 제재 효과는 거의 없다.
- Fact-10)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협정」(1996.4.28)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모든 미사일공격에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새 레이저방어무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담고 있다. 실제로 중동의 적성국가들이 사정거리 300km가 넘는 북한계 미사일을 손에 넣을 경우 이스라엘의 안보는 위협에 처해 진다.
- Fact-11) 미 국무부는 1997년 9월 17일 미국내 동결되어 있는 북한자산의 해제를 위한 조사착수를 결정하였다.¹⁸²⁾ 미국은 북한이 대중동 미사일 수출거래 중단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에서 취해진 조치였다.¹⁸³⁾
- Fact-12) 미·북간 3차, 5차, 6차 미사일회담에서 북한은 대중동국가에 대한 미사일무기 수출 중단 대가로 그에 해당하는 외화보상을 미국에 표명·요구했고, 미국은 현금보상 불가 입장을 내세워 북한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182) 미국은 「적성국교역법」(Trade with the Enemy Act)에 의거, 북한 거주민의 미국내 자산 동결 및 미국민과의 모든 무역·경제 거래를 금지시켰다. 1994년 말 동결자산 규모는 약 2,000만 달러 규모였으나, 1995년 1월 부분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로 약 550만 달러 상당의 동결자산이 해제된 바 있다. 현재 약 1,400만 달러 가량이 동결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은행예금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부동산·현금 등의 자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동향」, 제348호 (1997.9.13~19), p. 31 참고.

183) 이와 함께 장 대사 사건으로 격앙된 북한을 달래고 북한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2차 4자회담 예비회담에서 북한이 의제 문제 등에서 유연하게 나와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다.

Fact-13) 미국은 북한과의 6차 미사일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액수에 해당되는 현물지원(식량, 석탄 등)을 제시했고 북측은 이를 받아 들었다.

PA-US-1) 북한이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30억 달러에 해당되는 현물보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미사일수출 중단(또는 감소)의 수혜국이 될 이스라엘·일본과 함께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PA-US-2) 북한이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대북 현물보상과 함께 동결된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를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북한자산 동결해제조치는 북측과 청산협상을 진행한 뒤 자산동결 문제의 해결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다.

M-3: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행위 → 강도 높은 제재조치

M-4: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 중단 및 테러지원행위 중단 →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 해제

Fact-1) 미국은 어떠한 형태의 테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테러참사 이후 미국은 테러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제반 행위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제재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이나 테러조직에 대한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도 해당행위로 본다.

- Fact-2) 북한은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공격 직후 미국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비난했으나, 곧 바로 리형철 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를 통해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對테러전쟁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왔다.¹⁸⁴⁾
- Fact-3) 미 국무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기 위한 조건으로 반테러 조약 서명, 테러 규탄의지 표명, 북한에 있는 4명의 일본 적군과 추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Fact-4) 911 미국테러사건 이후 북한은 2001년 11월 12일 「테러자금 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과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등 반테러관련 유엔국제조약에 정식 서명하였다.
- Fact-5) 북한은 2001년 12월 1일~4일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대륙북상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 「가소성 폭약의 참지용표지에 관한 협약」, 「폭탄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 반테러관련 미가입 5개 유엔국제조약에 가입할 의사를 방북한 스웨덴 특별사절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184) 이러한 상반된 북한의 입장은 아랍권 국가들 특히 그 동안 거래를 유지해 온 적성중동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 북한의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최근 일본 적군파를 테러단체에서 뺀 상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해서 지정해 놓은 것은 비합리적이라 보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묶는 적대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도 비난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PA-US-1) 북한이 테러지원국가나 테러조직들에 대한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MTCR에 규정된 장비·기술 수출 불허 결정외 그 동안 조치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원상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 PA-US-2) 더 강도 높은 조치로 미국이 미사일 장비를 실은 북한선적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 PA-US-3)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을 중단하고 테러위협·지원·행위를 중단한다면 미 행정부는 의회의 지지를 받은 후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 PA-US-4) 부시 행정부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발효되면 미국은 대북원조 금지, 미 군수품목에 포함된 상품 및 기술 수출 금지, 이중 용도로 사용가능한 상품·기술 수출 금지, 농업무역 및 개발법, 평화봉사단법 및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원조 금지,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지원 금지, 전리품의 이전 금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면제 금지,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인과 북한정부 간의 금융거래 금지, 기업 또는 개인이 북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요구 금지 등의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수출입은행 사용금지 조항을 규정한 대외원조령을 북한에 적용할 것이며 미 기업이 북한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미 수출입은행의 지불보증과 수출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M-5: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 경제제재 완화조치 원상복귀

- Fact-1) 북한 외교부는 1999년 9월 24일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중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Fact-2)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와 함께 클린턴 전 행정부는 베를린 고위급 회담(1999.9.7~12) 및 페리보고서(1999.9.7~12)의 결과에 따라 2단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한 바 있다.
- Fact-3)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통해 북한이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 Fact-4)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에 당장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경우, 미·북관계는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¹⁸⁵⁾이라 경고한 바 있다.
- PA-US-1)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면 미사일 유예조치에 따라 조치한 수출, 금융, 투자, 항공기 및 선박 등 4개 분야에 부과해 온 무역제재완화조치를 원상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M-6: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및 개발 중단 →
대북지원 확대, 추가 경제제재완화조치

185) *U.S. Department of State Daily Press Briefing*, 3 Feb. 1999.

- Fact-1) 북한은 체제유지의 수단, 군사력 증강 및 외화획득 등을 위해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생산·개발하고 있다.
- Fact-2) 미국은 제네바합의 당시 미·북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의 미사일문제가 선행 해결되어야 함을 전한 바 있으나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어떠한 메커니즘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 Fact-3) 미사일발사 유예 조치로 미사일 개발 포기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이란·파키스탄 등 미사일 구입 국가들로부터 시험결과를 전달받을 경우, 시험발사 없이 장거리 탄도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 PA-US-1)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및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지원 확대와 함께 현 상태로 남아있는 제재조치 중 실효성이 있는 제재완화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수출입 제한조치에 대한 포괄적 완화로 수출입 가능품목 확대로부터 시작해 수출입 규제를 전면 철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상품·기술·서비스가 미국으로 수출입될 수 있도록 하며, 점진적으로 그 폭과 범위를 넓힐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과 일본·서방 국가 기업들과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이다.
- M-7: 장거리 미사일 개발·시험발사 포기,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중단, 중거리 미사일 전방 배치 철수 ↔ 인공위성 대리 발사, 대규모 식량지원, 추가 경제제재 완화조치

Fact-1) 미·북 미사일 전문가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와 미국의 보상을 맞추는 일괄타결을 시도

한 바 있으나, 발사횟수·비용·형태 문제와 인공위성 대리 발사시 북한 기술진의 참여문제로 합의는 결렬되었다.

PA-US/NK-1) 발사횟수·비용·형태 문제에 대해 미·북간 절충선을 찾고 북한이 기술진의 발사체 미접근을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통제와 미국의 보상으로 한 맞교환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성사되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시험발사 포기, 중·단거리 미사일수출 중단, 중거리 미사일 전방 배치를 철수할 것이다. 맞교환 식에 의해 미국은 인공위성 대리발사와 함께 대규모 식량 지원과 추가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 PA-US/NK: 미국과 북한의 가능한 행동

MBC-1: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에 대한 포괄적 통제 → 인공위성 대리발사, 테러지원국 해제, 대규모 식량지원, 추가 경제제재 완화조치

Fact-1) 북한은 대량의 생화학무기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Fact-2) 부시 행정부는 미국테러사건 이후 북한의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act-3) 미국과 북한은 회담 또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에 상응하는 조치를 논의한 적이 없으며, 미국이 핵·미사일 문제 외 생화학무기 문제를 취급할 것 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 Fact-4) 북한은 「생물무기협정」(BWC)에 가입한 상태다. BWC는 생물무기의 연구·개발·생산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장검증과 협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협정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 그래서 미국·북한 등 일부 BWC 가입국은 공격용 생물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 Fact-5) 미국은 2001년 7월 생물무기를 금지한 1972년의 초안에 힘을 실어주는 의정서 초안을 거부하였다. 탄저테러에 직면하자 미국은 BWC 협정 위반자에 대한 국가간 인도, 위험 미생물에 대한 엄격한 접근 규제, 타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병 발생시 국제적인 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¹⁸⁶⁾
- Fact-6) 북한은 「화학무기협정」(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이전·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사찰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 PA-US-1) 북한이 BWC 새 의정서에 서명하고 CWC에 가입하면 미국이 정부적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과 경제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 PA-US-2) 북한이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중단에 이어 생산감축에 나서고 BWC 및 CWC에 따라 생화학무기 생산 중단에 나선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정부적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과 경제지원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에 따른 보상을 <M-7, PA-US/NK-1>에 나타

186) *New York Times*, 31 Oct. 2001.

난 바와 같이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북한을 제외시킬 것이며 이와 관련된 제재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의 수출입을 장려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정상교역관계’(Normal Trading Relations: NTR) 및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GSP)¹⁸⁷⁾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RCW: 재래식 군사력 감축 →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 Fact-1) 북한은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전선에 전진 배치한 거대한 군사력이 동맹국 한국과 지역의 안정에 위협을 주고 있다.
- Fact-2) 부시 행정부는 핵, 미사일, 테러지원이라는 기존의 3대 쟁점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제기해 새로운 의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 Fact-3)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상응하는 조치를 밝힌 바가 없다.
- Fact-4) 북한은 재래식 전력 감축을 체제 수호 차원에서 민감하게 여기고 있고 미사일보다 더 강하게 주권사항으로 간

187) 미국은 북한을 자유이민조항 미준수국가로 간주, NTR 대우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사항과 함께 북한이 국제통화기금 미가입국, 테러지원국, 근로자의 권리 미인정국 등의 이유를 들어 GSP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NTR을 부여받지 못하면 미국이 북한상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높은 관세로 인해 다른 국가들의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거의 가지지 못해 상품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만약 북한이 NTR 대우를 부여받지 못하면 GSP의 적용도 부여받지 못한다. 따라서 필요조건, 즉 NTR을 부여받은 뒤 GSP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주하고 있다.

Fact-5) 미·북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군사력을 강제할 수단과 방법은 한계가 있다.

Fact-6)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감축과 관련해 “자위적 수단인 우리 공화국의 상용무력은 조미협상 의제로 결코 될 수 없다”¹⁸⁸⁾고 주장한 바 있고, 미국이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바란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Fact-7)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제3차 4자회담에서 거론된 바 있다.¹⁸⁹⁾ 한·미는 북한군·한국군·주한미군 등 한반도의 모든 군사력의 동시감축을 병행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Fact-8) 부시 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 I, 1990.4)¹⁹⁰⁾에서 나타난 주한미군 3단계 감축 계획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려는 3단계 철군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단계는 1990~1992년, 2단계는 1993~1995년, 그리고 3단계는 1996년부터 5~10년간에 걸쳐 진행하도

188) 『로동신문』, 2001.6.20.

189) 이와 관련 이현경,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28~29 참조.

190)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G.P.O., April 1990). 러시아의 군사력 감축과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중국의 100만 명 병력감축이 진행되자 미국은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 군사력 감축을 계획한 것이다. 주한미군철수 계획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군비감축과 아시아의 긴장완화 그리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 (1991.12.31)에 동참하고 『남북불가침협정』에 서명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구조 완화를 위한 위장적 노력에 편승된 것이다.

록 계획한 바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 1단계에 2,000명의 공군 및 5,000명의 지상군을 그리고 2단계에 6,500명을 추가 철수하고, 미군이 감축되면 주한미군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조적 역할로 변경해 나간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PA-US-1)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나서고 한반도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사라질 경우 미국은 <RCW, Fact-8>의 과정을 참고 삼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EASI I에 기초해 1단계는 1,700명의 공군과 4,300명의 지상군의 감축이 진행될 수 있다. 2단계는 5,600명을 추가 철수하고 3단계는 신속배치전략에 의해 5년에서 7년 사이 해·공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상군 철수가 가능해 질 것이다.

CPA: 핵·미사일·생화학무기 확산 중단 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 ↔ 대규모 보상 (포괄적 일괄타결 접근)

- Fact-1)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전 국방차관보가 이끈 검토팀은 1999년 2월 26일 『아미티지보고서』로 명명된 ‘포괄적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¹⁹¹⁾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에 우선적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그리고 재래식 무기 등에 의한 군사위협을 감소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경우 미국은

191) Richard L. Armitag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Strategic Forum*, NDU INSS, no. 159 (March 1999).

대북지원 및 경제제재완화조치, 안전보장, 국교수립 등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미티지보고서」는 유인책과 함께 채찍을 병행하면서 대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억지와 외교조치를 병행 추진하되 강력한 억지력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 억지력 강화와 함께 북한을 봉쇄해야 한다는 구상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및 공해상에서 미사일 수출 저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Fact-2) 페리(William J. Perry) 대북정책조정관이 이끈 검토팀은 1999.9.15~16 「페리보고서」로 명명된 「포괄적 통합된 접근」(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¹⁹²⁾ 同 보고서는 먼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과 우방들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억지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북한의 오판 가능성 및 핵·미사일 개발 의도로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모두를 획득할 경우 한반도의 안정이 위태로워지며, 억지력 약화는 물론 억지 실패시 초래될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同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획득이 역내 군비경쟁 및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대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 보고 이러한 무기의 확산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同 보고서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전략 구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

192) *Perry's Testimony*, 12 Oct. 1999;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다. 중·장기적 접근으로서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하면 미국이 북한의 협력 확보를 위해 미·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계획 및 미사일개발 중단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은 이 전략에 따라 북한이 위협으로 느끼는 정치적·경제적 압력의 포괄적 완화를 제안하려 하지만 평양지도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취할 조치는 구상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첫번째 접근방식(path one)이 실패할 경우 두번째 접근방식(path two)을 채택하기는 여러 면에서 어렵다. 심지어 이 전략은 북한의 행위나 행동이 도발적이거나 유화적이라는 가정을 피하고 있는데, 북한이 테러행위 및 침략위협을 행할 때 그리고 미사일 개발을 자주권 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진할 때 미국이 이를 강제적으로 저지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의 침략위협 감소 및 억지력 확보와 관련,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Fact-3)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합의 이행 개선, 북한의 미사일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미사일수출 금지, 재래식 군사위협 감소 등을 대북협상 의제로 삼고 있다.
- Fact-4) 탄저테러 이후 미국은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
- Fact-5) 부시 대통령은 만약 어떤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겨냥해 테러목적으로 사용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면 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검증

을 허용해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¹⁹³⁾

Fact-6)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미사일) 검증이나 (핵) 사찰, (재래식) 무력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¹⁹⁴⁾

PA-US/NK-1) 북한이 핵·미사일·생화학무기 확산 중단 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나서고 개혁·개방에 호응할 경우 미국이 대규모 식량·생필품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지원, 전면적 경제제재완화조치, 정상교역관계 대우 및 일반특혜관세제도 부여, 정치·경제·사회·문화 교류 확대, 경수로 완공 전까지 전력제공, 경수로 송배전망 건설 지원, 북한체제 존립 보장, 관계개선 및 미·북 수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3. 경험적 접근에 의한 미·북간 시뮬레이션

가. 핵 문제

<제네바합의>

$$\text{공식 1) } GA = \frac{\text{USA}}{\text{NKA}}$$

GA: 제네바합의

USA: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것

NKA: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이 미국에 약속한 것

193) Remarks by the President in Welcoming to the White House the Aid Workers Rescued from Afghanistan, 26 Nov. 2001.

194) 『로동신문』, 2001.7.9.

공식 2) $USA = SO + LWR1 + LWR2$

공식 3) $NKA = S(MW1 + MW2 + MW3) + I + T$

- SO: 50만 톤의 중유 제공 (1년 기준)
- LW1: 1기 경수로 공급, LW2: 2기 경수로 공급
- S: 원자로 재장전 및 관련 시설의 건설 작업 금지
- MW1: 5MWe 원자로, MW2: 50MWe 원자로, MW3: 200MWe
- I: 임시·일반 사찰 수용
- T: 봉인된 사용후 핵연료 제3국 이전

<우선 순위>

공식 4) $SO > LWR1 > LWR2$

공식 5) $S > I > T$

- SO: 중유지원 중단시 북한은 핵동결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중유 제공의 중요도에 따라 임의로 50의 비중을 둔다.
- LWR1: 경수로 공급 지연이 핵동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의로 30의 비중을 둔다.
- LWR2: LWR1에 비해 LWR2의 비중의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임의로 20의 비중을 둔다.
- S(MW1 + MW2 + MW3): 북한은 5MWe의 재장전 및 50MWe, 200MWe의 작업 개시는 핵동결 파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의로 50의 비중을 부여한다.

- I: IAEA의 임시·일반 사찰로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별사찰이 필요되지만 제네바합의는 경수로 핵심부품 공급 전에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하기로 되어 있다. 경수로 건설 지연을 이유로 북한은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그 비중을 임의로 30으로 한다.
- T: 1기 경수로 미완공의 이유를 들어 북한은 봉인된 사용후 핵연료의 제3국 이전을 지연하고 있다. 이전 지연이 핵동결 파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비중을 임의로 20으로 한다.

$$\text{공식 4-1) } SO > LWR1 > LWR2 = 50 > 30 > 20$$

$$\text{공식 5-1) } S(MW1 + MW2 + MW3) > I > T = 50 > 30 > 20$$

<합의 이행 정도>

$$\text{공식 6) } OUSA = OSO + OLWR1 + OLWR2$$

$$\text{공식 7) } ONKA = OS(MW1 + MW2 + MW3) + OI + OD$$

$$\text{공식 8) } OGA = \frac{OUSA}{ONKA} = \frac{OSO + OLWR1 + OLWR2}{OS(MW1 + MW2 + MW3) + OI + OT}$$

- OGA: 제네바합의 이행 정도
 OUSA: 미국의 제네바합의 이행 정도
 OSO: 대북 중유지원의 이행 정도
 OLW1: 1기 경수로 건설 진행 정도

- OLW2: 2기 경수로 건설 진행 정도
- ONKA: 북한의 제네바합의 이행 정도
- OS: 원자로 재장전 및 관련 시설 건설 작업 중단 정도
- OI: 임시·일반 사찰 수용 정도
- OT: 봉인된 사용후 핵연료의 제3국 이전 여부

공식 6-1) $OUA = OSO + OLWR1 + OLWR2 = 50 + 15 + 10 = 75$

공식 7-1) $ONKA = OS(MW1 + MW2 + MW3) + OI + OT = 50 + 30 + 10 = 90$

공식 8-1) $\frac{OUA}{ONKA} = \frac{OSO + OLW1 + OLW2}{OS(MW1 + MW2 + MW3) + OI + OT} = \frac{75}{90} = 0.83$

- OSO: 미국은 50만 톤의 중유 제공을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SO(50)의 범위에서 50을 부여한다.
- OLWR1: 1기 경수로 건설은 반 정도 이루어진 상태다. 따라서 LWR1(30)의 범위에서 임의로 15의 비중을 부여한다.
- OLWR2: 2기 경수로 건설은 반 정도 이루어진 상태다. 따라서 LWR2(20)의 범위에서 임의로 10의 비중을 부여한다.
- OS(MW1 + MW2 + MW3): 북한은 5MWe, 50MWe, 200MWe의 재장전 및 작업 개시를 중단하고 있다. 따라서 S(MW1 + MW2 + MW3)의 50 비중에서 임의로 50의 비중을 부여한다.
- OI: 북한은 IAEA의 임시·일반 사찰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제네바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IAEA가 요구하는 핵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I(30)의 범위에서 임의로 10의 비중을 배당한다.

OT: 북한은 폐연료봉의 봉인을 완료했다. 그러나 경수로 공급 지연을 이유로 들어 봉인된 폐연료봉의 제3국 이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의로 15의 비중을 준다.

<위기 정도>

공식 9) $X < ONKA, OUSA \leq X + 10$

X: 위기 정도에 따라 임의로 배당된 비중

공식 9-1) $0.9 < OGA \leq 1, 90 < ONKA, OUSA \leq 100$
위기 정도가 매우 낮다

공식 9-2) $0.8 < OGA \leq 0.9, 80 < ONKA, OUSA \leq 90$
위기 정도가 낮다

공식 9-3) $0.6 < OGA \leq 0.8, 60 < ONKA, OUSA \leq 80$
위기 정도가 보통이다

공식 9-4) $0.5 < OGA \leq 0.6, 50 < ONKA, OUSA \leq 60$
위기 정도가 높다

공식 9-5) $0.4 < OGA \leq 0.5, 40 < ONKA, OUSA \leq 50$
위기 정도가 매우 높다

공식 9-6) $OGA \leq 0.4, ONKA, OUSA \leq 40$
전쟁 상태

대북 중유지원과 함께 경수로 공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봉인된 사용후 핵연료의 이전 완료, IAEA의 특별 사찰 등이 이루어질 때 <공식 9-1>과 같이 위기 정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경수로 건설이 조금 지연되나 IAEA의 확대된 사찰이 이루어지면 <공식 9-2>와 같이 위기 정도는 낮을 것이다.

경수로 공급 지연과 봉인된 사용후 핵연료의 이전 지연 등이 있으나 미국의 대북 중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공식 9-3>과 같이 위기 정도는 보통이 될 것이다.

미국이 IAEA의 특별사찰을 절대적으로 강요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OI, OSO, OLWR1, OLWR2의 비중이 낮아져 <공식 9-4>와 같이 위기 정도가 높아 질 것이다.

미국이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OI와 OT가 낮아지고, OS(MW1 + MW2 + MW3)도 낮아진다. 이 때 <공식 9-5>와 같이 위기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 의혹을 불러일으킬 때 OSO, OI, OSO, OLWR1, OLWR2의 비중이 크게 낮아져 <공식 9-5>과 같이 위기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미국이 대북 중유지원 중단과 함께 화력발전소 건설에 나설 때 또는 북한이 핵동결을 파기할 때 OUSA 및 ONKA가 크게 낮아져 <공식 9-6>과 같이 전쟁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문제 타결>

$$\text{공식 8-1)} \quad \frac{\text{OUSA}}{\text{ONKA}} = 1$$

1기, 2기 경수로 공급 완료, 1기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5MWe 원자로의 재장전 금지 및 50MWe, 200MWe 원자로 건설 작업 금지, 봉인된 사용후 핵연료의 제3국 이전 이행, IAEA의 특별사찰 수용 등이 이루어질 때 핵문제

는 타결된다.

나. 미사일 문제

<미사일 프로그램>

$$\text{공식 10) } MP = MD + MT + ME + MS$$

MP: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MD: 장거리 미사일 개발

MT: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ME: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MS: 중거리 미사일 배치

$$\text{공식 11) } MD + MT > ME > MS$$

대적성 중동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수출 저지가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므로 임의로 35의 비중을 부여한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저지는 매우 중요하나 개발을 위해 시험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각각 25의 비중을 부여한다.

미사일 배치문제는 미사일 개발, 시험발사, 수출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으므로 임의로 15의 비중을 부여한다.

$$\text{공식 11-1) } MD + MT > ME > MS = 50 > 35 > 15$$

<현재의 상황>

공식 10-1) $MP = MD + MT + ME + MS = 25 + 0 + 20 + 15 = 60$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MD에 대해 임의로 25의 비중을 둔다.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했기 때문에 MT에 대해선 임의로 0의 비중을 부여한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최근 판매를 시도하고 있어 그 비중을 임의로 20로 한다.

미사일 배치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임의로 그 비중을 15로 한다.

<위기 정도>

공식 12) $X < MP < X + 10$

공식 12-1)	$MP \leq 50$	위기 정도가 매우 낮다
공식 12-2)	$50 < MP \leq 60$	위기 정도가 낮다
공식 12-3)	$60 < MP \leq 80$	위기 정도가 보통이다
공식 12-4)	$80 < MP \leq 90$	위기 정도가 높다
공식 12-5)	$90 < MP \leq 100$	위기 정도가 매우 높다

북한이 미사일 수출·개발·생산·시험발사·배치 등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공식 12-1>과 같이 위기 정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생산을 계속하나 미사일 수출 및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미사일 배치를 후방으로 후퇴하면 <공식 12-2>와 같이 위기

정도는 낮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생산·배치를 계속하나 미사일 수출 및 시험발사를 중단하면 <공식 12-3>과 같이 위기 정도는 보통이 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생산·배치를 계속하면서 미사일 수출을 감행할 때 <공식 12-4>와 같이 위기 정도는 높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생산·배치를 계속하면서 미사일 수출과 시험발사를 계속할 때 <공식 12-5>과 같이 위기 정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협상타결 방안>

$$\text{공식 13) SMP} = \frac{\text{LS} + \text{ES-3}}{\text{SMD} + \text{SMT}} + \frac{\text{SC} + \text{RE}}{\text{SME}} + \frac{\text{SF}}{\text{SMS}}$$

$$\text{공식 13-1) SMP} \cong 3$$

- SMP: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 SMD: 미사일 개발 중단
- SMT: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 SME: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 중단
- SMS: 미사일 전방 배치 철수
- LS: 인공위성 대리발사와 북한기술진의 발사체 미접근
- ES-3: 3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
- SC: 30억 달러에 상당하는 현물 보상
- RE: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해제
- SF: 대규모 식량지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시험발사 중단에 나서는 대가로 미국이 국제사회의 인공위성 대리발사와 3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에 나서고, 북한이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 중단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30억 달러에 상당하는 현물 보상과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을 해제하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전방 배치 철수에 대해 미국이 대규모 대북식량지원에 나서면 미사일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다. 생화학무기 문제

<현황>

공식 14) $SBCW = DBW + DCW + SBW + SCW$

SBCW: 생화학무기 현황

DBW: 생물무기 개발·생산

DCW: 화학무기 개발·생산

SBW: 생물무기 밀수출

SCW: 화학무기 밀수출

생화학무기 생산·개발과 밀수출은 생화학테러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같게 둔다. 따라서 DBW, DCW, SEBW, SECW에 각각 25의 비중을 임의로 부여한다.

공식 14-1) $SBCW = 25 + 25 + 0 + 0 = 50$

북한은 다량의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DBW와 DCW에 각각 25의 비중을 임의로 둔다.

북한의 생물무기, 화학무기 밀수출이 알려진 바는 없다. 따라서 SBW와 SCW에 임의로 각각 0의 비중을 부여한다.

$$\text{공식 15)} \quad X < SBWC < X + 20$$

공식 15-1)	$SBCW \leq 20$	위기 정도가 매우 낮다
공식 15-2)	$20 < SBCW \leq 40$	위기 정도가 낮다
공식 15-3)	$40 < SBCW \leq 60$	위기 정도가 보통이다
공식 15-4)	$60 < SBCW \leq 80$	위기 정도가 높다
공식 15-5)	$80 < SBCW \leq 100$	위기 정도가 매우 높다

<협상타결 방안>

$$\text{공식 16)} \quad SSBCW = \frac{SF + SE + SM}{ANBWC + ACWC}$$

$$\text{공식 16-1)} \quad SSBCW \cong 1$$

SSBCW: 생화학무기 해결방안

ANBWC: 생물무기협정의 새 협정 서명

ACWC: 화학무기협정 가입

SE: 경제지원

SM: 금융지원

북한이 「생물무기협정」 새 의정서 서명과 「화학무기협정」 가입과 함께 생화학무기 개발·생산을 중지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지원, 금융지원에 나서면 북한의 생화학무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 미사일·생화학무기 문제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국의 동맹국과 주한·주일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미사일·생화학무기 문제를 테이블에 같이 놓고 북한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협상타결 방안>

<공식 13>과 <공식 16>를 적용해 북한의 미사일·생화학무기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text{공식 17) SMBC} = \frac{LS + RT + ES-3 + ES-4}{SMD + SMT} + \frac{SC + RE}{SME} + \frac{SF}{SMS} + \frac{SF + SE + SM}{ANBWC + ACWC}$$

SMBC: 미사일 생화학무기 해결 방안

RT: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해제

ES-4: 4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 수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 완화, 정상교역관계 및 일반특혜관세제도 허용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생화학무기 문제 해결에 따른 조치를 <공식 13>, <공식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하고 더불어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이 조치에 따른 제재조치 해제 및 수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 완화와 같은 4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정상교역관계대우 및 일반특혜관세제도를 북한에 허용할 것이다.

마. 재래식 군사력 문제

$$\text{공식 18) } CWK = \frac{SCW + USF}{NCW}$$

CWK: 한반도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

NCW: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SCW: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

USF: 주한미군의 군사력

<협상타결 방안>

$$\text{공식 19) } SCWK = \frac{RSCW + RUSF}{RNCW} + RTP$$

SCWK: 재래식 군사력 해결방안

RNCW: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RSCW: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RUSF: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RTP: 한반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상태에서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감축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이루어지면 재래식 군사력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바. 일괄타결 방안

공식 20) $CPA = OGA + SBCW + SCWK + DRUS-NK$

CPA: 일괄타결 방안

$$\begin{aligned} \text{공식 20-1) } CPA = & \frac{OUSA}{ONKA} + \frac{LS + RT + ES-3 + ES-4}{SMD + SMT} + \frac{SC + RE}{SME} \\ & + \frac{SF}{SMS} + \frac{SF + SE + SM}{ANBWC + ACWC} + \frac{RSCW + RUSF}{RNCW} \\ & + RTP + DRUS-NK \end{aligned}$$

DRUS-NK: 미·북간 국교정상화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재래식군사력 문제에서 제시된 협상타결 방안과 해결방안을 미·북이 수용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추가적으로 받아들이면 맞교환식 일괄타결에 의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와 재래식 군사력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전략적 틀과 함께 핵·미사일 및 그 운반수단의 전면적인 확산으로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계 및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현실주의적 외교노선에 입각한 힘의 우선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량의 생화학무기 및 가공할 만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불량국가가 북한이 미국 및 동맹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으며, 대북정책의 기초와 원칙을 준수하면서 거래형식의 정치적 협상을 지양하려 한다.

이러한 방향과 함께 부시 진영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핵사찰 및 안전기준 이행,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한 협상에서 감시, 투명성, 상호주의에 비중을 두면서 그 이행까지 검증하려 한다. 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란 확고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며, 전술적 유동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려는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미국이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협상이든 협정이든 투명성을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체제가 확보되어야 하며, 비밀에 싸이고, 자유와 언론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와의 협정체결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제V장에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군사력 실태(제II장)와 이들 무기의 확산 저지를 위한 미국의 전략(제III장) 그리고 미·북간 핵·미사일 협상(제IV장)을 근간으로 미·북간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보았다. 미국이 대북협상에 있어 의제로 삼고자 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문제 등을 놓고 사실분석과 경험적 접근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핵문제 관련 미·북간 시뮬레이션에서 제네바합의의 준수 여부가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미·북간 합의가 양측의 행동의 지침인 동시에 또 다른 행동을 제약하고 있으나 이를 먼저 위배하는 경우 상대측의 반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준수하면 미국이 1기의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대북 중유제공 및 경수로 공급을 계속하며,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하면 미국이 관련 법안을 해제하고 경수로 핵심부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IAEA의 안전조치 이행 및 조기 특별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제네바합의 재검토를 비롯해 경수로 공급 지연·중단 등의 조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합의 없이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할 때 또는 대북 중유 지원 및 경수로 공급을 중단할 때 북한은 이를 제네바합의 위반으로 간주, 미·북간 합의사항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평양정책결정자들은 폐연료봉 반출을 지연하면서 핵개발 위협을 미국을 대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과거 핵물질의 행방을 포함, IAEA의 주도 하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핵폐기물 매립장 2곳에 대한 사찰을 계속해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미·북간은 경색국면에 놓여질 것이며 대북 중유 제공 중지를 포함해 경수로 공급지원이 난관에 처해질 것이다. 이는 곧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위기가 재연되었을 때 미국이 ‘시간적 테드라인’을 설정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한계선’을 긋거나 강도 높은 압박정책을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을 봉쇄·고립시키거나 북한의 핵시설물을 공격하는 군사제재 조치 역시 북한을 자극시켜 오히려 호전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북한이 제네바합의 파기에 나설 때 미국은 북한을 고립·봉쇄하는 선의의 무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더 강도 높은 조치로 북한의 핵시설을 부분적으로 폭격하는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시설물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공격과 같은 군사제재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案에 불과하나 실패확률이 높고, 폭격으로 인해 치명적인 방사능 유출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생화학무기 공격과 이들 무기를 사용해 테러에 나설 경우 미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제재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¹⁹⁵⁾ 한반도 전쟁예방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뒤엎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관련국 모두가 미국의 군사제재에 반대할 것이다. 미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시 냉전의 시대를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도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경우 전쟁이란 최후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양의 정책결정자들은 전쟁을 통해 공멸을 시도하기보다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을 통해 돌파구를 풀어나가려 할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먼저 위반하지 않는 한 미국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제네바합의의 틀 내에서 행동하고자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선 미국의 요구에 대해선 보상을 저울

195)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국의 수출액이 어느 지역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세계에서 이 지역만큼 자국의 이익에 결정적인 곳이 없다고 본다. Winston Lord, "U.S.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Pacific,"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27 Feb. 1995, pp. 143~147. 따라서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질하면서 수용 여부를 결정지으려 할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직 없고, 핵심부품 인도와 함께 이루어질 철저한 사찰을 강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선택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핵문제 해결은 북한의 IAEA 특별사찰 수용을 전제로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미국이 대북전력 제공에 나서는 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봉인된 폐연료봉의 3국 이전을 이행하고 IAEA의 무제한적인 사찰과 강화된 안전기준에 동의한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규모 대북지원과 전력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을 강제로 저지하기는 어렵다. 미·북간 합의를 미사일 개발·수출을 제한할 어떠한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했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체제수호, 군사력증강, 협상카드로 그리고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을 외화벌이 목적으로 여기고 있어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주권사항임을 주장할 때 미국이 적절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실제로 미사일이 안보의 문제이지 합법성의 문제가 아니므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수출이 미국의 동맹국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미국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북한의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북한자산 동결 해제 조치와 함께 30억 달러에 해당되는 현물 보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MTCR에 가입한다면 비확산 관련 법규 및 민감물자 통제에 관한 다자협정에 따른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개발 중단은 미국으로부터 대북지원 확대 및 추가 경제제재완화조치를 이

끌어 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추진하거나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행위를 추진하면 미국은 그 동안 취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원상 복귀함은 물론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나설 것이다.

미·북간 미사일 협상이 미진한 상태에서 양측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거의 합의에 도달한 내용을 참고 삼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와 미국의 보상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성사시킨다면 미사일문제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시험발사 포기 및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중단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철수를 실시하고, 미국이 대규모 식량·생필품지원, 추가 경제제재 완화조치, 국제사회의 인공위성 대리 발사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인공위성 대리 발사시 북한기술자의 참여 배제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청을 평양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양보 없이는 결코 맞교환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양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더 많은 식량·생필품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미사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탄저테러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태에 있다. 북한은 핵 다음에 미사일문제를 야기했고, 그 다음엔 생화학무기 확산을 가지고 미국과 흥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은 보다 강화된 「생물무기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한의 동참을 요청할 것이며 동시에 「화학무기협정」 가입을 촉구할 것이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 대가로 미국은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보상과 함께 추가적으로 정부적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과 경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면 미국은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와 더불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및 그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과 미·북간 교역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북한에 가져다 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정상교역관계대우 및 일반특혜관세제도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문제는 한·미 역할분담론에 입각해 남북한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사일보다 재래식 전력을 주권 차원에서 더 중시 여기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완화의 진전도에 따라 남북한이 구조적 군비통제와 운용적 군비통제를 차근차근 추진한다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예상하기 어렵다. 사안별로 보상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하지만 미국이 줄 수 있는 보상과 북한이 기대하는 보상에 차이가 있을 때 협상 타결은 어렵다. 미국의 요구가 너무 일방적이고, 북한의 요구가 너무 지나칠 때도 협상 타결은 어렵다. 핵문제는 제네바합의라는 잣대가 있지만 미사일문제는 기준 잣대가 없다. 북한이 「생물무기협정」 새 의정서와 「화학무기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하지 않을 때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강제력이란 수단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안별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 역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방식대로 북한을 달래고 북한의 페이스대로 미·북간 협상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협상의 틀을 타결한 뒤 실무자들에게 검증문제를 맡기

려 했던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구체적 약속 이행을 확인한 후에 다음 협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방식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예상행동에 북한이 응할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와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해선 일괄타결 방안이 적절한 대안이라 여겨진다. 그것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와 미·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포기와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나서고 개혁·개방에 호응할 경우 미국이 대규모 식량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국제기구 가입 지원, 전면적 경제제재완화조치, 정치·경제·사회·문화교류의 확대, 체제 존립 보장, 관계정상화 등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다.

일괄타결은 2단계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는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행하고 미사일의 전방 배치 및 기술·장비 수출 중단을 실현하면 미국은 북한이 경제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확실히 제공해 주고 관계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2단계는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이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개발 영구 중단과 함께 생화학무기 포기 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나서면 미국이 경제발전에 절대적 기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사회주의체제 보장과 국교정상화에 나서는 것이다. 요컨대, 1단계는 합의와 보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북한이 조치하고 그 대가를 미국이 제공하는 것이며, 2단계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단 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나서면 그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경제발전, 체제보장, 안전 등을 확실히 보장하고 북한과의 수교에 나서는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중단 및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통해서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서방세계로부터의 대규모 식량·경제지원 및 투자진출을 얻을 수 있어 북한의 경제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하

고 이를 바탕으로 체제를 보다 확고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안별 해결방안이나 일괄타결을 위해선 미·북 양측의 진통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미국이 정책을 확정짓고 북한에게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강요하면 절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 이러한 강요는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호전성과 투쟁성을 강화시키게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하게 만든다. 중국·러시아는 물론 한국정부마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도 부시 행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이라크, 코소보, 아프가니스탄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바 있는 미국이 한반도 군사충돌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해서 즉각적인 응징의 수단보다는 좀더 인내를 가지고 설득·협상하는 외교적 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적절한 당근을 내놓고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미·북간 협상은 절충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이 미·북 사이의 네트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911테러사건 이후 미·북간 대화·접촉이 사건 이전보다 더 후퇴한 상태에서 부시 행정부가 원점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다루려 한다면 협상은 시작조차 어려울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 미·북 간에는 협상타결의 길을 터 놓았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미·북간 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며 당근과 채찍의 수단과 함께 검증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911테러사건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반테러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연대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수출 그리고 생화학무기 보유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북한에게 과거의 혈맹동맹국이 더 이상 아니지만 미국에 비해 북한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중국의 역할은 보다 증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비대칭 위협과 새로운 테러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비확산과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의 전면적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국방백서 2000』. 서울: 국방부, 2000.
- _____.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서울: 국방부, 2001.
- _____. 『90-91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1990.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이종석 외.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 4강의 대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성남: 세종연구소, 2001.
- 이헌경.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_____.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Long-range Guided Weapons, Defense White Paper 19951~1996*. Seoul: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1996.
-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G.P.O., April 1990.

2. 논문, 보고서

- 강명근. “생물무기에 의한 공격위협 현황과 대비 및 대응방안의 모색.” 『화생무기의 국제적 위협실태 및 대처방안』 (제11회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 2001.10.12).

송대성.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군비경쟁적 요소와 군비통제적 요소.” 백종천·송대성 (편). 『2000년대초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성남: 세종연구소, 2001.

조이식. “화학무기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의 成立背景과 履行 展望.” 『한반도군비통제』. 서울: 국방부, 1994.

정우영. “화학 및 생물무기 테러 대응정책.” 『화생무기의 국제적 위협 실태 및 대처방안』 (제11회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 2001.10.12).

Abramowitz, Morton et al. “Report of the Independent Task Force on Korea.”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1 June 2001.

Armitage, Richard L.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Strategic Forum*, NDU INSS, no. 159 (March 1999).

Arms Control Association. “Chronology of U.S.-North Korea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August 2001).

Bermudez, Joseph S. “DPRK Ballistic Missile Characteristics,” 3 March 1999.

Cambone, Stephen A. “The United States and Theatre Missile Defence in Northeast Asia.” *Survival* 39, no. 3 (Autumn 1997).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Nonproliferation Project.” www.stimson.org/cwc/bwprolif.htm.

CIA. “Unclassified Report to Congress on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1 July Through 31 Dec. 2000.

_____. “The World Factbook: Korea, North.” 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kn.html.

- Costanzo, Charles E. "Shades of Sentinel? National Missile Defense, Then and Now," n.d.
- Hamm, Manfred R. "Deterrence, Chemical Warfare, and Arms Control." *ORBIS* (Spring 1985).
- Helms, Jesse. "What Sanctions Epidemic? U.S. Business' Curious Crusade."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1999).
- FAS. "Missiles," 25 August 2001.
- Fisher, Richard D., Jr. "Time to Stop North Korea's Missile Blackmail." *The Heritage Foundation Executive Memorandum*, no. 550 (September 1998).
- Lee, Hun Kyung. "The Clinton Administration'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34th International Seminar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Korea in Chirisan Plaza Hotel, 15~17 Oct. 1999.
- _____. "North Korea's Missile Threat, and The U.S. Strategy." Paper presented at the University of Hawaii, sponsored by 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6 June 2001.
- Lindblom, Charles E.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 (Spring 1959).
- Lord, Winston. "U.S.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Pacific."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27 Feb. 1995.
- Members of the Commis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Executive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15 July 1998 (Pursuant to Public Law 201 104th Congress).

- Moodie, Michael L. "The Chemical Weapons Threat." In *The New Terror: Facing the Threat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ed. Sidney D. Drell, Abraham D. Sofaer, and George D. Wilson. Stanford,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Foreign Missile Developments and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2015" (September 1999).
- Nonproliferation Center CIA.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1 Jan. through 30 June 1998.
- Perry, William J.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classified Report North Korea Policy Review*, 12 Oct. 1999.
- Tucker, Jonathan B. "The Biological Weapons Threat." *Current History* (April 1997).
- U.S. Department of State. "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20 Jan. 1995.
- _____.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Report-2000" (April 2000).
- The U.S. Secretary of Defense. "2000 Report to Congress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12 Sept. 2000.
- Wagner, Alex. "U.S.-North Korea Missile, Terrorism, Talks Resume: North Korea Admits to Exporting Rocket Technology" (September 2000).
-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act Sheet: 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17 Sept. 1999.

3. 연설, 증언, 성명

「국회통일외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1996.9.25.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1 Oct. 1994.

Kelly, James A.,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Nomine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Confirmation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enate, 26 April 2001.

News from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Opening Statement of Chairman Benjamin A. Gilman, Hearing: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the Pending Perry Review*, 24 March 1999.

Perry, William J.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enate, 12 Oct. 1999.

Powell, Colin L. *Confirmation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enate, 17 Jan. 2001.

_____. *Hearing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Commerce, Justice, State and the Judiciary*, 8 May 2001.

_____. *Testimony at Budget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House of Representative, 7 March 2001.

President George W. Bush's Inaugural Address, 20 Jan. 2001.

Pritchard, Charles. *Hearing Testimony before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enate, 6 Nov. 2001.

Remarks by James A. Kelly. "Transcript: U.S., Japan, S. Korea Share Views on North Korea." *Washington File*, 30 May 2001.

Remarks by the Deputy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John E. McLaughlin to Texas A&M Conference, "North Korea: Engagement or Confrontation," 17 April 2001.

Remarks by the President in Welcoming to the White House the Aid Workers Rescued from Afghanistan, 26 Nov. 2001.

Remarks by the President to Students and Faculty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 May 2001.

Roth, Stanley O.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Pacific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19 March 1996.

Schwartz, Thomas, Commander-in-Chief of U.S. Forces Korea. *Testimony before a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on the Department of Defense Fiscal Year 2001 Budget*, 15 March 2000.

Statement by James P. Rubin, *Report on the U.S. Visit to the Site at Kumchang-ni,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5 June 1999.

Statement of The Honorable John R. Bolton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o the Fifth Review Conference of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Geneva, Switzerland, 19 Nov. 2001.

"Text: Bush Statement on Undertaking Talk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File*, 7 June 2001.

“Text: State Department Release on Visit to North Korean Facility,” *Washington File*, 30 May 2000.

U.S. Department of State. *U.S.-D.P.R.K. Joint Communique*, 12 Oct. 2000.

U.S. Department of State Daily Press Briefing, 9 March 2001/3 Feb. 1999/28 April 1997.

Wolfowitz, Paul. *Prepared Testimony on Ballistic Missile Defense to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12 July 2001.

4. 기 타

「경향신문」.

「Newsmaker」.

「内外通信」.

「동아일보」.

「로동신문」.

「민주조선」.

「북한동향」.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뉴스」.

「월간중앙」.

「조선일보」.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중앙일보」.

「한국일보」.

「평양방송」.

「每日新聞」.

「産經新聞」.

「世界週報」.

「日本經濟新聞」.

「朝日新聞」.

「週刊文春」.

「環球時報」.

AFP.

Asia Times.

AP.

CNN.

Defense News.

The Economis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es Defense Weekly.

Jane's Intelligence Review.

Los Angeles Times.

New York Times.

Newsweek.

NHK.

Radio Free Asia.

SAPIO.

South China Morning Post.

USA Today.

Washington Post.

Washington Times.